

전라북도 학생인권 토론회

생활규정개정 사례로 보는 학생인권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3층 대회의실
일시 : 22.04.14. (목) 오후 2시 - 4시

공동주최

(사)전주여성의전화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시간	프로그램	내용	쪽수
14:00 - 14:10	안내 및 여는 인사	사회자	
14:10 - 14:25	발제	2021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나타난 학생인권 상황 - 염규홍,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2
14:25 - 14:40	발제	학생인권조례 10년,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 공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7
14:40 - 15:00	토론	우리가 보는 세상 - 정소정, 전북외국어고등학교	39
15:00 - 15:20	토론	생활규정 개정, 끝이 아닌 시작이 되도록 - 정다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42
15:20 - 15:40	토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것들 -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47
15:40 - 16:00	질의응답 및 토론	참가자 전체	

발제 ① 2021 실태조사에 나타난 학생인권 상황¹⁾

- 염규홍,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조사관

1) <2021 학생인권 실태조사> 전체 내용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https://office.jbedu.kr/human/M0106/>)

1. 학생인권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학 생 :	합 계	초등학교(4~6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 체	147,976	48,097	49,347	50,532
참여자	8,664	2,341	4,018	2,305
참여율	5.9%	4.9%	8.1%	4.6%

교 원 :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 체	17,781	7,330	4,531	5,029	891
참여자	1,370	588	393	372	17
참여율	7.7%	8.0%	8.7%	7.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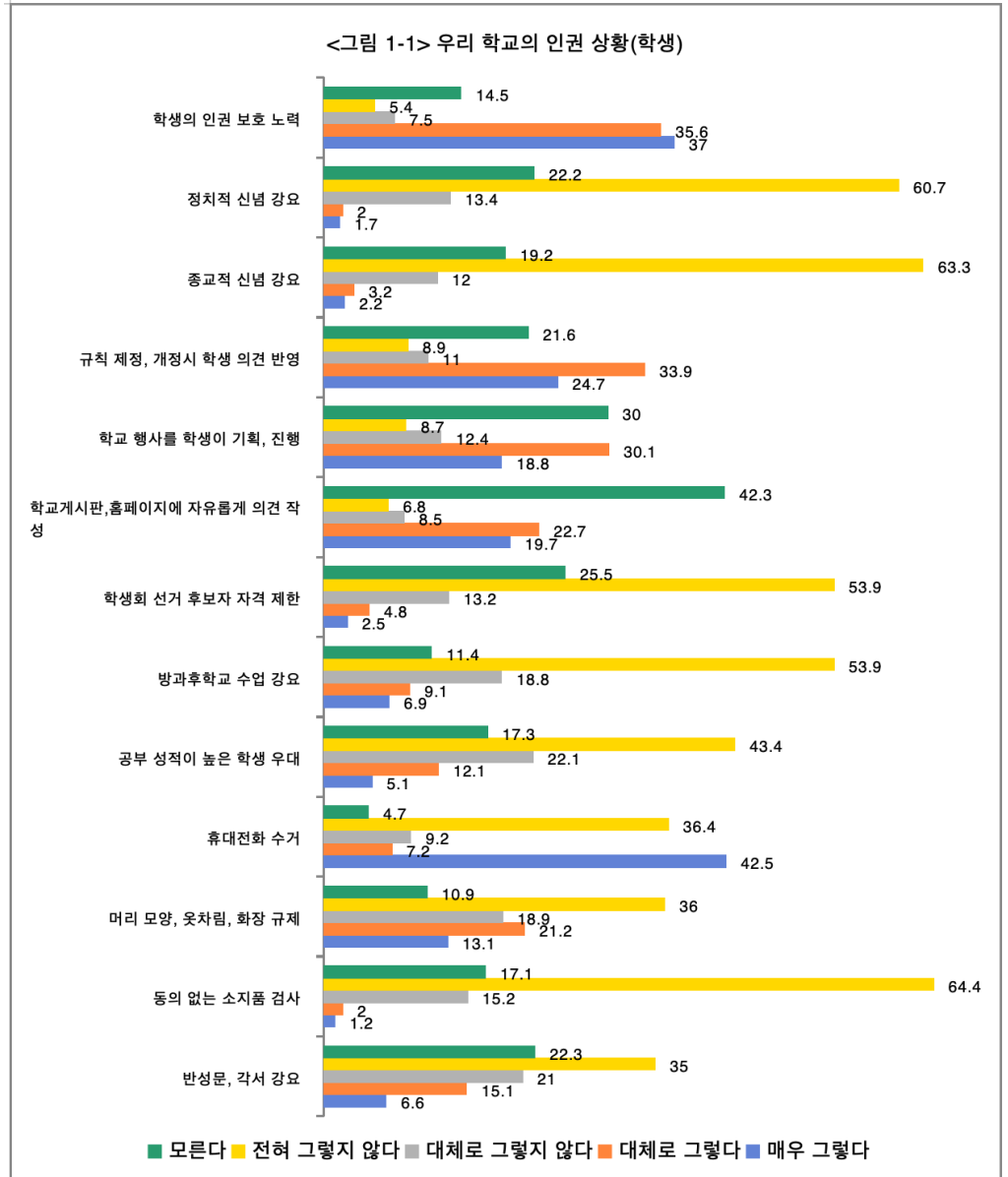
2)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유레카 QR코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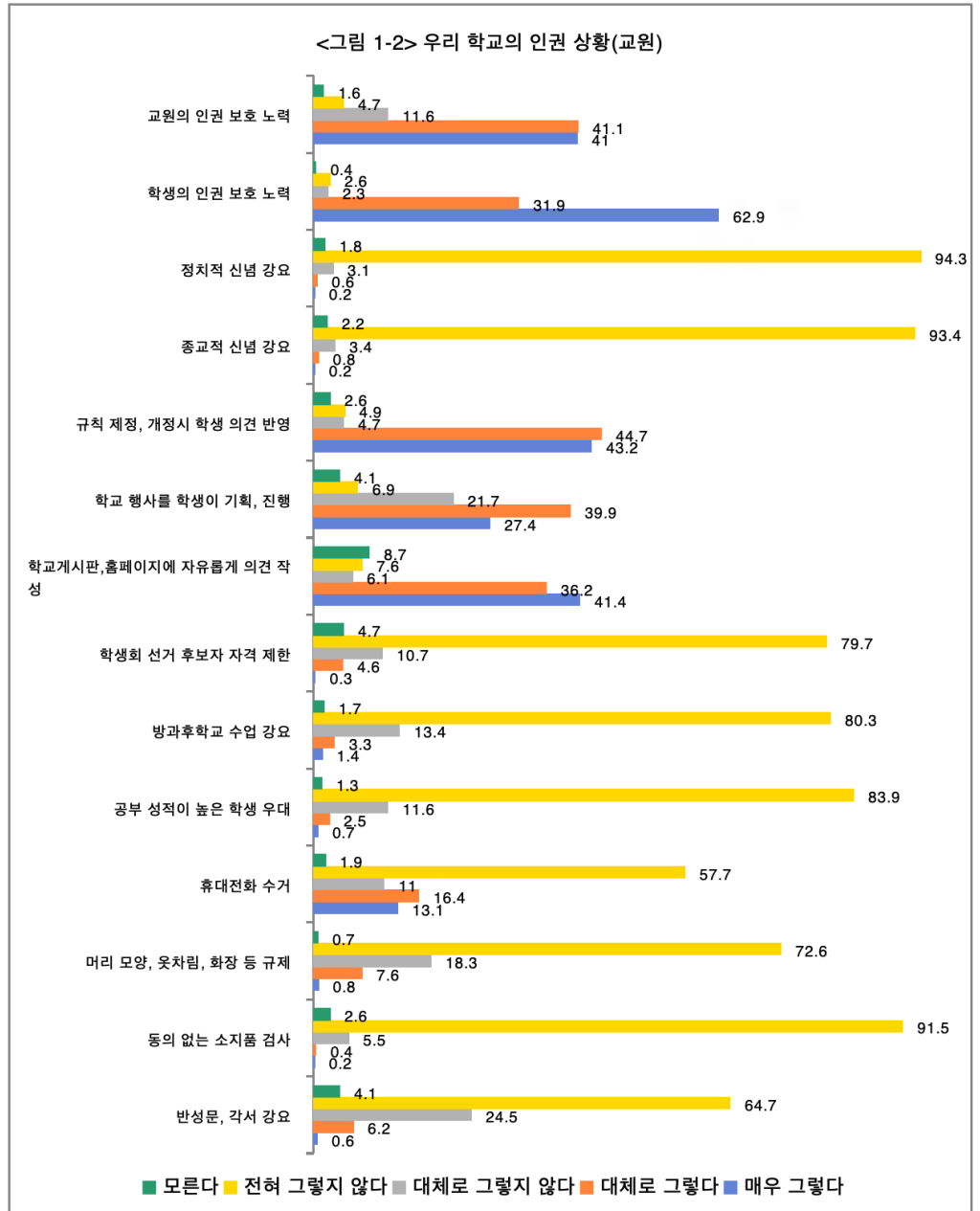
3) 조사 기간 : 2021.10.12.(화) ~ 2021.11.5.(금)

4) 성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 체	여 성	남 성
학 생	8,664	4,582(52.9%)	4,082(47.1%)
초등학교	2,341	1,187(50.7%)	1,154(49.3%)
중학교	4,018	2,283(56.8%)	1,735(43.2%)
고등학교	2,305	1,112(48.2%)	1,193(51.8%)
교 원	1,370	823(60.1%)	547(39.9%)
초등학교	588	409(69.6%)	179(30.4%)
중학교	393	240(61.1%)	153(38.9%)
고등학교	372	168(45.2%)	204(54.8%)
특수학교	17	6(35.3%)	11(64.7%)

2. 2021년 학교에서의 인권 상황





(1) 규칙 제·개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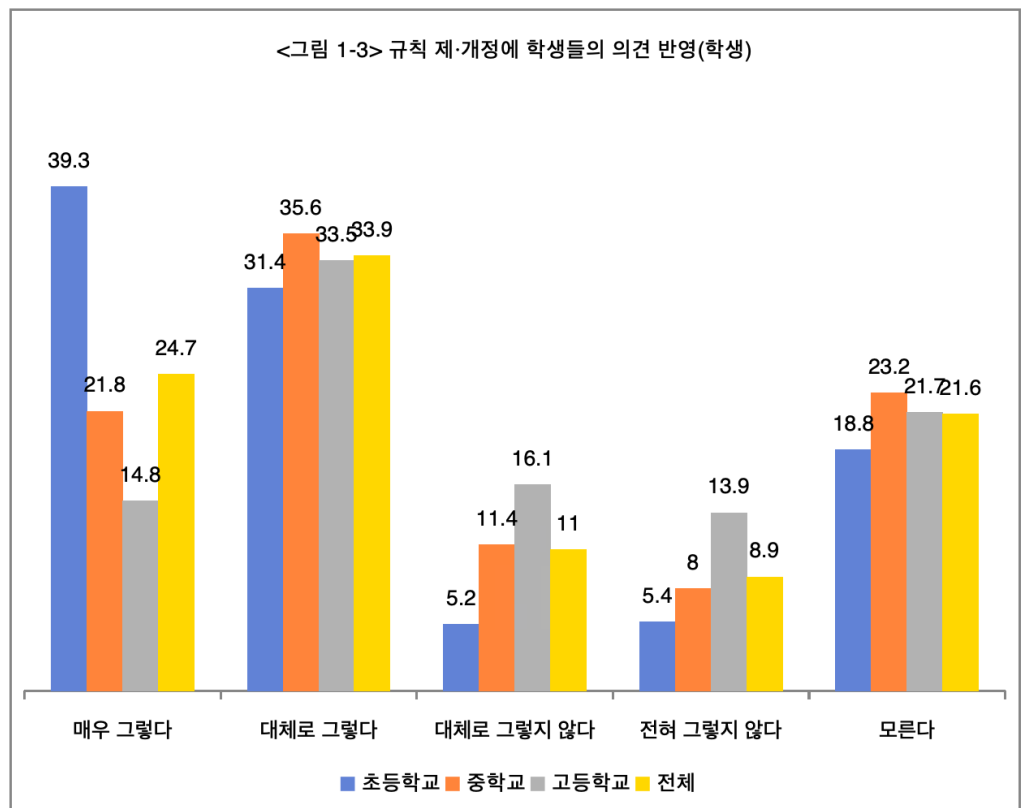
문) (공통) 우리 학교는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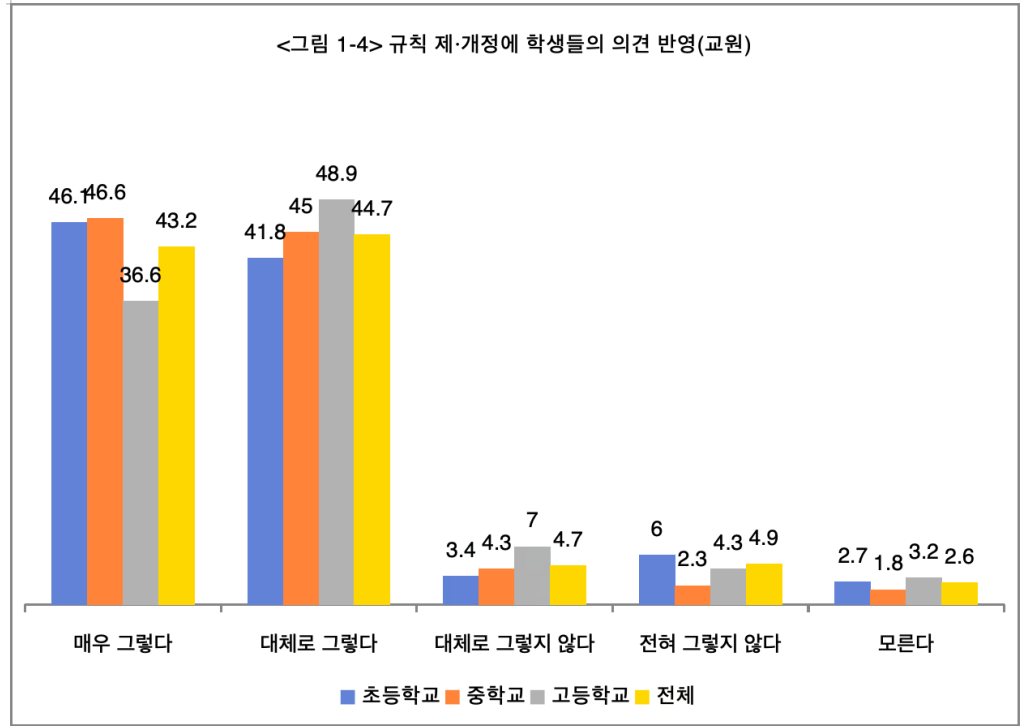
○ 학교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그림 1-3>과 같이 전체 학생의 24.7%가 ‘매우 그렇다’, 33.9%가 ‘대체로 그렇다’, 11.0%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8.9%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학생의 58.6%가 학교에서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9.9%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70.7%, 중학생 57.4%, 고등학생 48.3%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10.6%, 중학생 19.4%, 고등학생 30.0%였음.

○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이, ‘매우 그렇다’는 43.2% , ‘대체로 그렇다’는 44.7%라고 응답하여 87.9%의 교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9.6%의 교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원의 11.3%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학교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학생과 교원의 응답률의 차이가 큼. 고등학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학생 14.8%, 교원 36.6%, ‘대체로 그렇다’ 학생 33.5%, 교원 48.9%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데 긍정하는 답변은 학생 48.3%, 교원 85.5%,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학생 16.1%, 교원 7.0%,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13.9%, 교원 4.3%로 부정적인 답변은 학생 30.%, 교원은 11.3%였음. 이렇게 학생과 교원의 응답률이 차이가 큰 이유는 학생회 임원 등 대표자들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규정 제개정위원회에 참여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이 규정에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표 1-3>과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2019년 49.8%, 2020년 42.6%, 2021년 58.6%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졌음.





<표 1-1> 우리 학교는 규칙(학교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학생)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학 생	빈도수	8,664	2,137	2,935	949	769	1,874
	백분율	100.0%	24.7%	33.9%	11.0%	8.9%	21.6%
초	빈도수	2,341	920	734	121	126	440
	백분율	100.0%	39.3%	31.4%	5.2%	5.4%	18.8%
중	빈도수	4,018	877	1,429	457	322	933
	백분율	100.0%	21.8%	35.6%	11.4%	8.0%	23.2%
고	빈도수	2,305	340	772	371	321	501
	백분율	100.0%	14.8%	33.5%	16.1%	13.9%	21.7%

<표 1-2> 우리 학교는 규칙(학교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교원)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교 원	빈도수	1,370	592	612	64	67	35
	백분율	100.0%	43.2%	44.7%	4.7%	4.9%	2.6%
초	빈도수	588	271	246	20	35	16
	백분율	100.0%	46.1%	41.8%	3.4%	6.0%	2.7%
중	빈도수	393	183	177	17	9	7
	백분율	100.0%	46.6%	45.0%	4.3%	2.3%	1.8%
고	빈도수	372	136	182	26	16	12
	백분율	100.0%	36.6%	48.9%	7.0%	4.3%	3.2%
특수	빈도수	17	2	7	1	7	0
	백분율	100.0%	11.8%	41.2%	5.9%	41.2%	0.0%

<표 1-3> 우리 학교는 규칙(학교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학생,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연도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학생	2021	8,664	2,137(24.7)	2,935(33.9)	949(11.0)	769(8.9)	1,874(21.6)
	2020	14,591	6,215(42.6)			1,846(12.7)	6,530(44.8)
	2019	2,703	1,346(49.8)			344(12.7)	1,013(37.5)
초	2021	2,341	920(39.3)	734(31.4)	121(5.2)	126(5.4)	440(18.8)
	2020	3,535	1,684(47.6)			198(5.6)	1,653(46.8)
	2019	1,187	652(54.9)			65(5.5)	470(39.6)
중	2021	4,018	877(21.8)	1,429(35.6)	457(11.4)	322(8.0)	933(23.2)
	2020	5,924	2,554(43.1)			669(11.3)	2,701(45.6)
	2019	1,047	465(44.4)			182(17.4)	400(38.2)
고	2021	2,305	340(14.8)	772(33.5)	371(16.1)	321(13.9)	501(21.7)
	2020	5,132	1,977(38.5)			979(19.1)	2,176(42.4)
	2019	469	229(48.8)			97(20.7)	143(30.5)

● 2019, 2020년도는 <그렇다/아니다/모른다> 항목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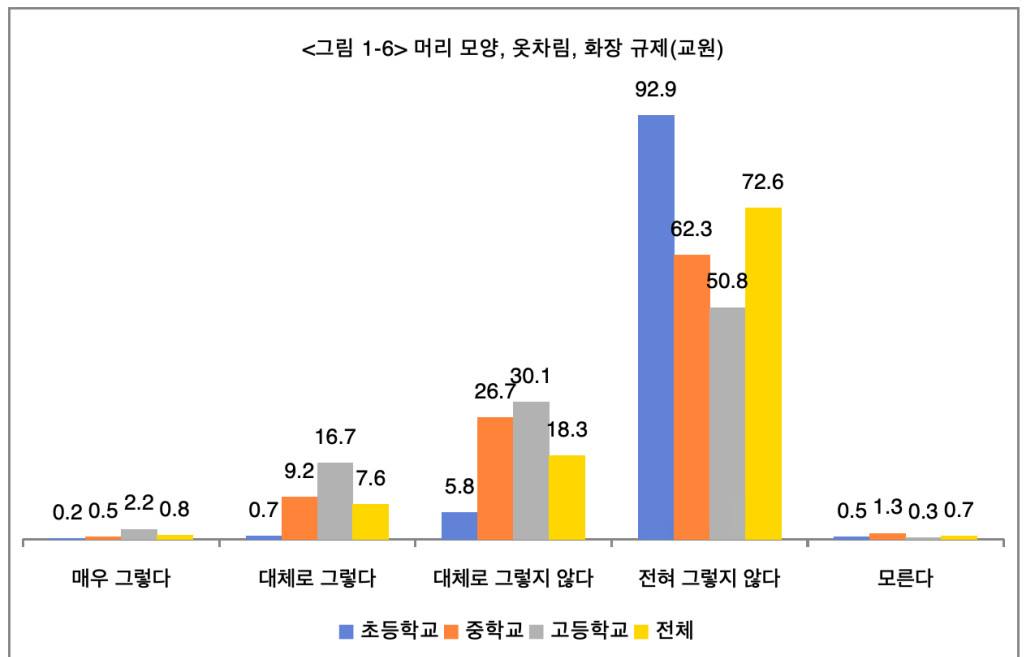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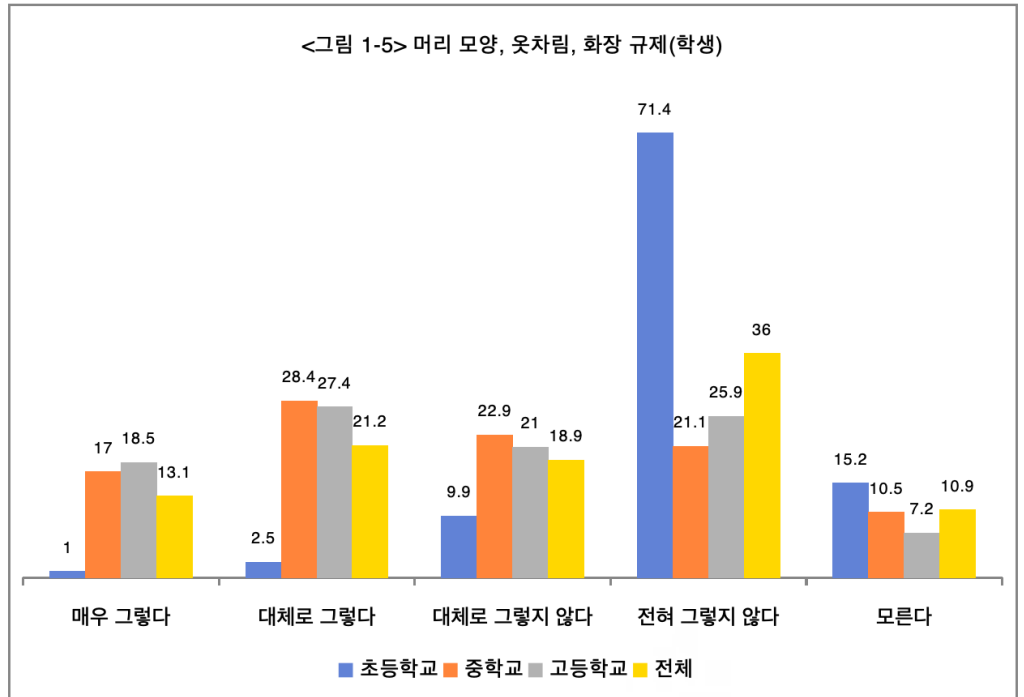
(2)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규제

문) (공통) 우리 학교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등을 규제한다.

○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1-5>와 같이 초등학생은 3.5%,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45.4%, 45.9%가 규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학생의 44.0%, 고등학생의 46.9%가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이, 초등학교는 거의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0.9%), 중학교는 9.7%, 고등학교는 18.9%의 학교에서 옷차림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응답률과는 차이가 컸음.

○ 연도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표 1-6>), 중학생은 2019년 62.1%, 2020년 67.9%, 2021년 45.4%, 고등학생은 2019년 64.2%, 2020년 68.1%, 2021년 45.9%가 규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2021년에는 머리 모양 등을 규제한다는 응답 비율이 줄어 들었음.



<표 1-4> 우리 학교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등을 규제한다.(학생)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학 생	빈도수	8,664	1,134	1,833	1,637	3,116	944
	백분율	100.0%	13.1%	21.2%	18.9%	36.0%	10.9%
초	빈도수	2,341	24	59	231	1,672	355
	백분율	100.0%	1.0%	2.5%	9.9%	71.4%	15.2%
중	빈도수	4,018	683	1,143	922	848	422
	백분율	100.0%	17.0%	28.4%	22.9%	21.1%	10.5%
고	빈도수	2,305	427	631	484	596	167
	백분율	100.0%	18.5%	27.4%	21.0%	25.9%	7.2%

<표 1-5> 우리 학교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등을 규제한다.(교원)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교 원	빈도수	1,370	11	104	251	995	9
	백분율	100.0%	0.8%	7.6%	18.3%	72.6%	0.7%
초	빈도수	588	1	4	34	546	3
	백분율	100.0%	0.2%	0.7%	5.8%	92.9%	0.5%
중	빈도수	393	2	36	105	245	5
	백분율	100.0%	0.5%	9.2%	26.7%	62.3%	1.3%
고	빈도수	372	8	62	112	189	1
	백분율	100.0%	2.2%	16.7%	30.1%	50.8%	0.3%
특수	빈도수	17	0	2	0	15	0
	백분율	100.0%	0.0%	11.8%	0.0%	88.2%	0.0%

<표 1-6> 우리 학교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등을 규제한다.(학생, 연도별)

(단위: 명, %)

구 분	연 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학 생	2021	8,664	1,134(13.1)	1,833(21.2)	1,637(18.9)	3,116(36.0)	944(10.9)
	2020	14,591	7,772(53.3)			6,819(46.7)	
	2019	2,703	1,051(38.9)			1,652(61.1)	
초	2021	2,341	24(1.0)	59(2.5)	231(9.9)	1,672(71.4)	355(15.2)
	2020	3,535	255(7.2)			3,280(92.8)	
	2019	1,187	100(8.4)			1,087(91.6)	
중	2021	4,018	683(17.0)	1,143(28.4)	922(22.9)	848(21.1)	422(10.5)
	2020	5,924	4,024(67.9)			1,900(32.1)	
	2019	1,047	650(62.1)			397(37.9)	
고	2021	2,305	427(18.5)	631(27.4)	484(21.0)	596(25.9)	167(7.2)
	2020	5,132	3,493(68.1)			1,639(31.9)	
	2019	469	301(64.2)			168(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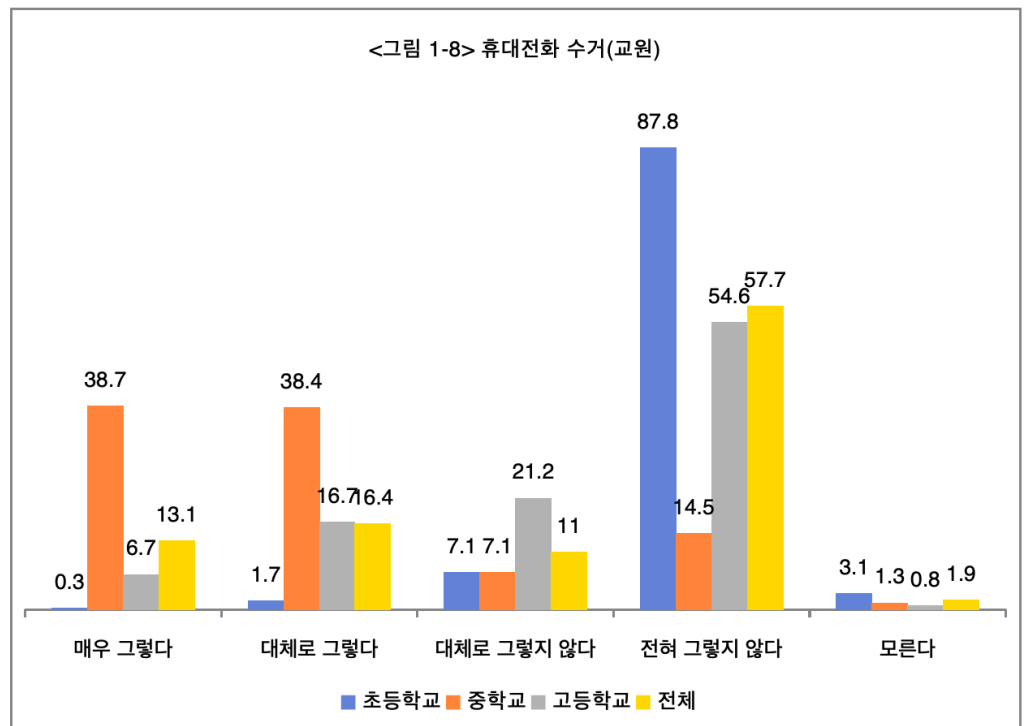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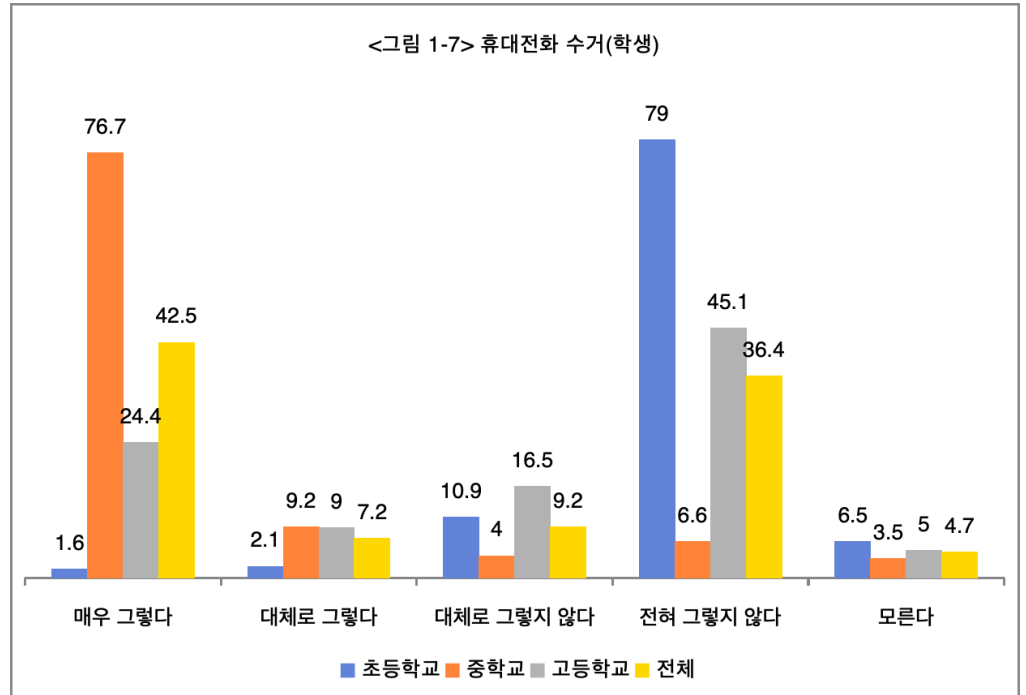
● 2019, 2020년도는 <그렇다/아니다> 항목으로 조사함.

(3) 휴대전화 수거

문) (공통)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다.

-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1-7>과 같이 휴대전화를 걷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은 3.7%, 중학생은 85.9%, 고등학생은 33.4%로 나타나 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비율이 높았음.
-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1-8>과 같이 초등학교 교원의 2.0%, 중학교 교원 77.1%, 고등학교 교원의 23.4%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걷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학생이나 교원의 응답을 통해 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연도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표 1-9>), 초등학생은 2019년 17.5%, 2020년 8.5%, 2021년 3.7%가 휴대전화를 수거한다고 응답하여 초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수거나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고등학생은 2019년 74.8%, 2020년 44.3%, 2021년 33.4%가 휴대전화를 걷는다고 응답하여,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고등학교가 대폭 줄어들었음. 중학생은 2019년 89.4%, 2020년 90.4%, 2021년 85.9%가 휴대전화를 걷는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걷고 있음.



<표 1-7>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다.(학생)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학 생	빈도수	8,664	3,682	628	794	3,154	406
	백분율	100.0%	42.5%	7.2%	9.2%	36.4%	4.7%
초	빈도수	2,341	37	50	254	1,849	151
	백분율	100.0%	1.6%	2.1%	10.9%	79.0%	6.5%
중	빈도수	4,018	3,083	370	160	265	140
	백분율	100.0%	76.7%	9.2%	4.0%	6.6%	3.5%
고	빈도수	2,305	562	208	380	1,040	115
	백분율	100.0%	24.4%	9.0%	16.5%	45.1%	5.0%

<표 1-8>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다.(교원)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교 원	빈도수	1,370	179	224	151	790	26
	백분율	100.0%	13.1%	16.4%	11.0%	57.7%	1.9%
초	빈도수	588	2	10	42	516	18
	백분율	100.0%	0.3%	1.7%	7.1%	87.8%	3.1%
중	빈도수	393	152	151	28	57	5
	백분율	100.0%	38.7%	38.4%	7.1%	14.5%	1.3%
고	빈도수	372	25	62	79	203	3
	백분율	100.0%	6.7%	16.7%	21.2%	54.6%	0.8%
특수	빈도수	17	0	1	2	14	0
	백분율	100.0%	0.0%	5.9%	11.8%	82.4%	0.0%

<표 1-9> 우리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는다.(학생,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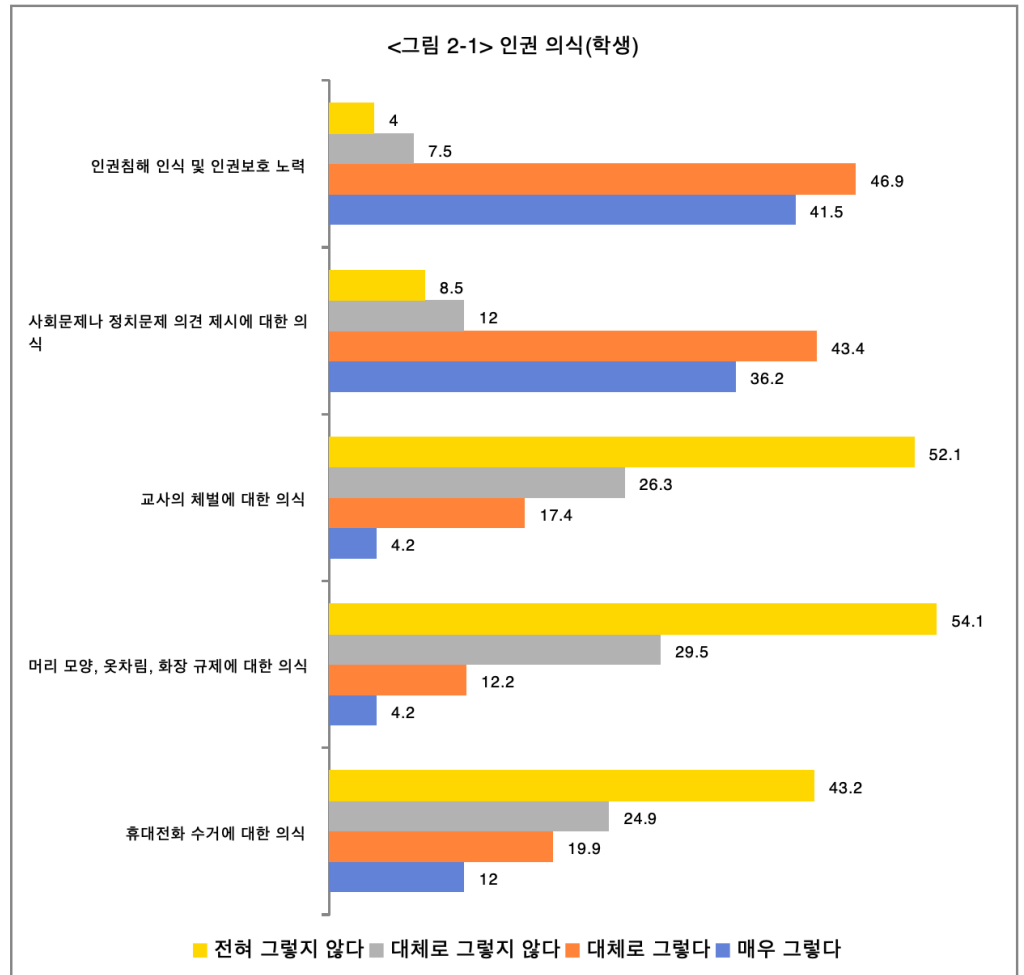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연 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른다
학 생	2021	8,664	3,682(42.5)	628(7.2)	794(9.2)	3,154(36.4)	406(4.7)
	2020	14,591	7,933(54.4)			6,301(43.2)	357(2.4)
	2019	2,703	1,495(55.3)			1,177(43.5)	31(1.2)
초	2021	2,341	37(1.6)	50(2.1)	254(10.9)	1,849(79.0)	151(6.5)
	2020	3,535	300(8.5)			3,235(91.5)	
	2019	1,187	208(17.5)			979(82.5)	
중	2021	4,018	3,083(76.7)	370(9.2)	160(4.0)	265(6.6)	140(3.5)
	2020	5,924	5,357(90.4)			423(7.1)	144(2.4)
	2019	1,047	936(89.4)			89(8.5)	22(2.1)
고	2021	2,305	562(24.4)	208(9.0)	380(16.5)	1,040(45.1)	115(5.0)
	2020	5,132	2,276(44.3)			2,643(51.5)	213(4.2)
	2019	469	351(74.8)			109(23.2)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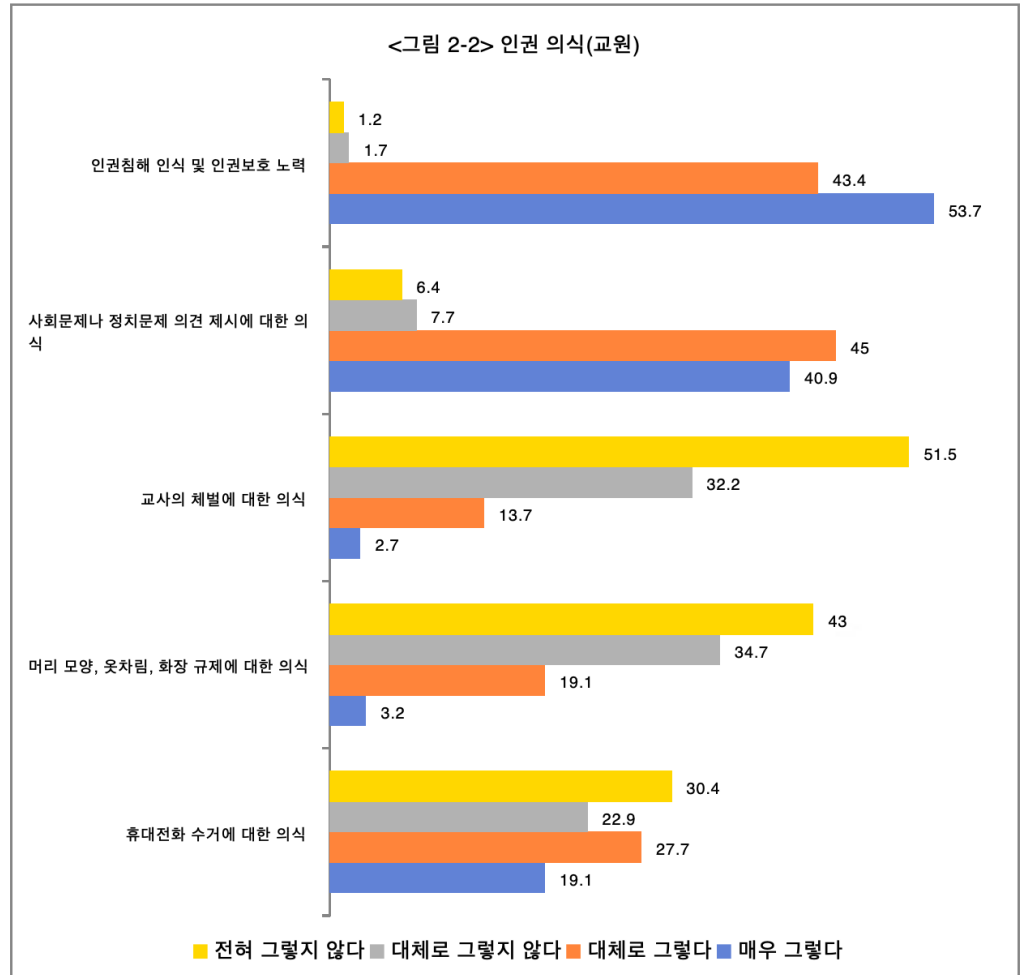
● 2019, 2020년도는 초등학생 <그렇다/아니다>, 중·고등학생 <그렇다/아니다/모른다> 항목으로 조사함.

3. 인권 의식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과 관련된 나의 생각’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그림 2-1>과 같음.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는 질문에 31.9%의 학생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동의하였고, 68.1%의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음.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16.4%가 동의하였고, 83.6%가 동의하지 않았음.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체벌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21.6%가 동의하였고, 78.4%가 동의하지 않았음.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79.6%가 동의하였고, 20.5%는 동의하지 않았음.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에 대해서는 88.4%가 동의하였고, 11.5%가 동의하지 않았음.



○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과 관련된 나의 생각’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음.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는 질문에 46.8%의 교원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동의하였고, 53.2%의 교원은 동의하지 않았음.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22.3%가 동의하였고, 77.7%가 동의하지 않았음.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체벌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16.4%가 동의하였고, 83.6%가 동의하지 않았음.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85.9%가 동의하였고, 14.1%는 동의하지 않았음.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에 대해서는 97.1%가 동의하였고, 2.9%가 동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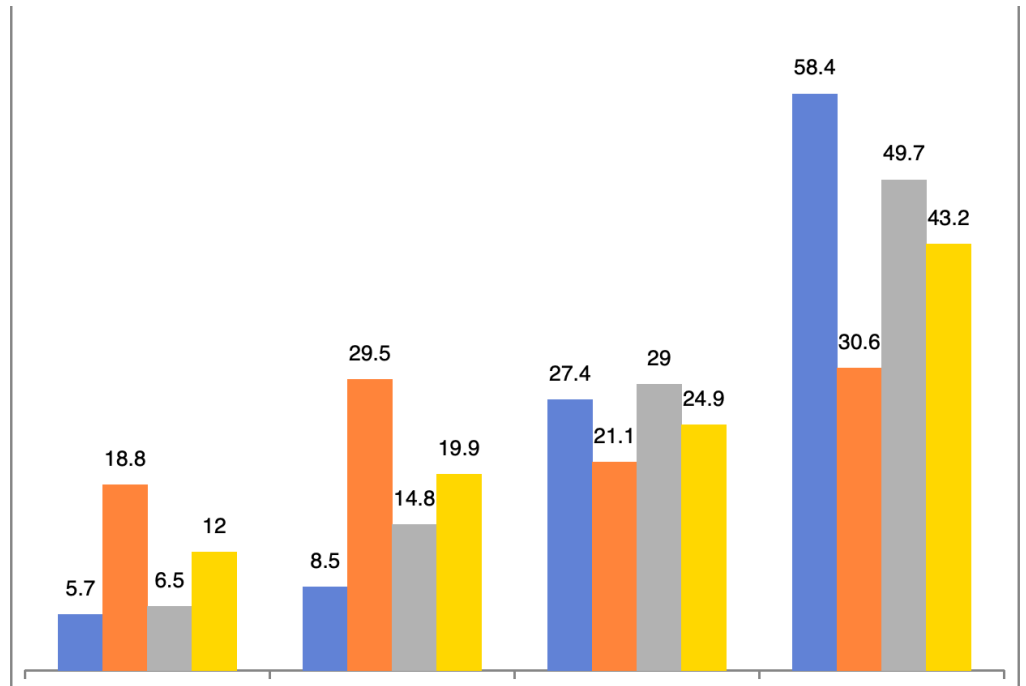


(1)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의식

문) (공통) 나는 “수업 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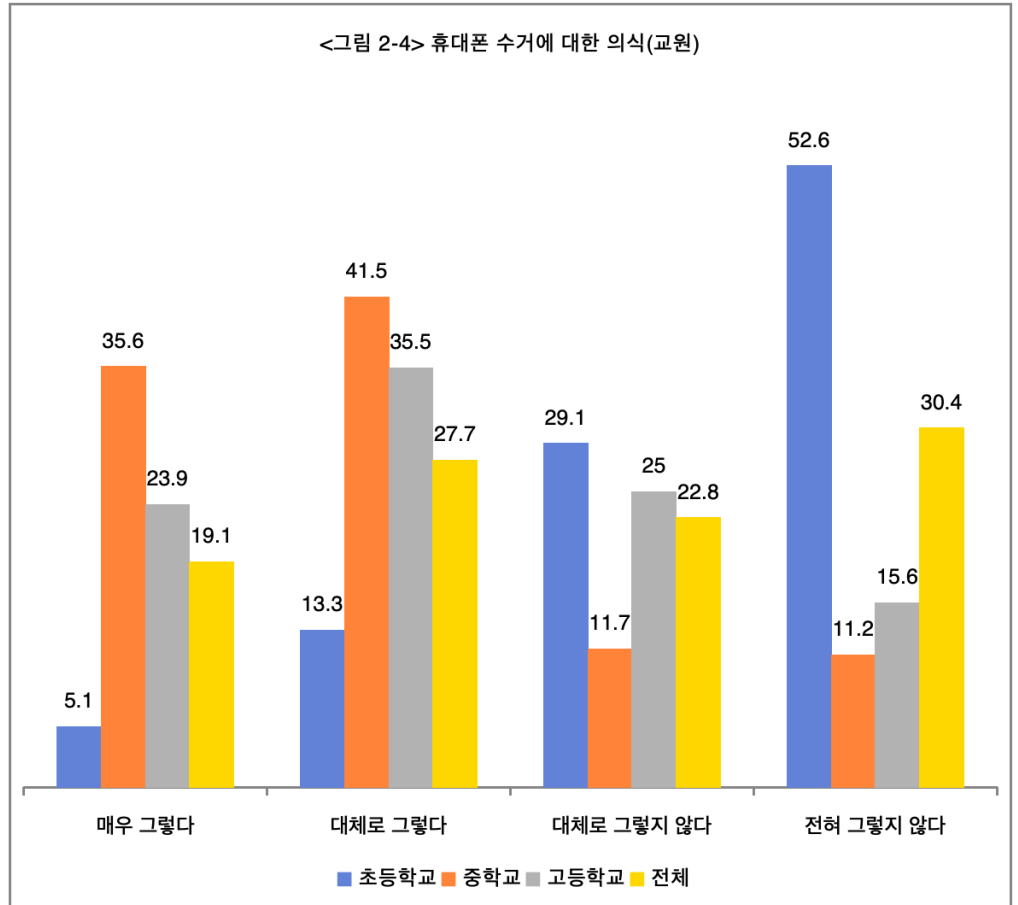
○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설문 결과는 <그림 2-3>과 같음.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 12.0%, ‘대체로 그렇다’ 19.9%, ‘대체로 그렇지 않다’ 24.9%, ‘전혀 그렇지 않다’ 43.2%라고 응답하였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 14.2%, 고등학교생 21.3%가 동의하였으나, 중학교생은 48.3%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표 2-3>과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2019년 37.7%, 2020년 36.5%, 2021년 31.9%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의 결과는 <그림 2-4>와 같음.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 19.1%, ‘대체로 그렇다’ 27.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8%, ‘전혀 그렇지 않다’ 30.4%라고 응답하여, 학생들보다는 휴대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더 높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18.4%, 고등학교 교원의 59.4%, 중학교 교원의 77.1% 순으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동의율이 높았음.

○ <표 2-4>와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2019년 65.6%, 2020년 54.7%, 2021년 46.8%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학생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음.



<표 2-1> 나는 “수업 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학생)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 생	빈도수	8,664	1,038	1,724	2,159	3,743
	백분율	100.0%	12.0%	19.9%	24.9%	43.2%
초	빈도수	2,341	134	200	641	1,366
	백분율	100.0%	5.7%	8.5%	27.4%	58.4%
중	빈도수	4,018	754	1,184	849	1,231
	백분율	100.0%	18.8%	29.5%	21.1%	30.6%
고	빈도수	2,305	150	340	669	1,146
	백분율	100.0%	6.5%	14.8%	29.0%	49.7%

<표 2-2> 나는 “수업 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걸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교원)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 원	빈도수	1,370	261	380	313	416
	백분율	100.0%	19.1%	27.7%	22.8%	30.4%
초	빈도수	588	30	78	171	309
	백분율	100.0%	5.1%	13.3%	29.1%	52.6%
중	빈도수	393	140	163	46	44
	백분율	100.0%	35.6%	41.5%	11.7%	11.2%
고	빈도수	372	89	132	93	58
	백분율	100.0%	23.9%	35.5%	25.0%	15.6%
특수	빈도수	17	2	7	3	5
	백분율	100.0%	11.8%	41.2%	17.6%	29.4%

<표 2-3> 나는 “수업 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학생,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연도	전체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그렇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	평균*
학생	2021	8,664	1,038(12.0)	1,724(19.9)	2,159(24.9)	3,743(43.2)	2.99
	2020	14,591	1,736(11.9)	3,594(24.6)	4,673(32.0)	4,588(31.4)	2.83
	2019	2,703	405(15.0)	614(22.7)	797(29.5)	887(32.8)	2.80
초	2021	2,341	134(5.7)	200(8.5)	641(27.4)	1,366(58.4)	3.38
	2020	3,535	507(14.3)	744(21.0)	1,204(34.1)	1,080(30.6)	2.81
	2019	1,187	185(15.6)	228(19.2)	391(32.9)	383(32.3)	2.82
중	2021	4,018	754(18.8)	1,184(29.5)	849(21.1)	1,231(30.6)	2.64
	2020	5,924	927(15.6)	2,035(34.4)	1,609(27.2)	1,353(22.8)	2.57
	2019	1,047	172(15.4)	268(25.6)	279(26.7)	328(31.3)	2.73
고	2021	2,305	150(6.5)	340(14.8)	669(29.0)	1,146(49.7)	3.22
	2020	5,132	302(5.9)	815(15.9)	1,860(36.2)	2,155(42.0)	3.14
	2019	469	48(10.2)	118(25.2)	127(27.1)	176(37.5)	2.92

* 평균값 = ((1)응답자 수*1+(2)응답자 수*2+(3)응답자 수*3+(4)응답자 수)/대상자 수
 (1.038*1+1.724*2+2.158*3+3.753*4)/8.664 = 2.99

<표 2-4> 나는 “수업 중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교원, 연도별)

단위: 명, (%)

구 분	연 도	전 체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그렇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	평균
교 원	2021	1,370	261(19.1)	380(27.7)	313(22.8)	416(30.4)	2.65
	2020	2,684	663(24.7)	814(30.3)	856(31.9)	351(13.1)	2.33
	2019	1,550	492(31.7)	526(33.9)	371(23.9)	161(10.4)	2.13
초	2021	588	30(5.1)	78(13.3)	171(29.1)	309(52.6)	3.29
	2020	1,300	185(14.2)	287(22.1)	578(44.5)	250(19.2)	2.69
	2019	736	165(22.4)	177(24.0)	266(36.1)	128(17.4)	2.49
중	2021	393	140(35.6)	163(41.5)	46(11.7)	44(11.2)	1.98
	2020	741	293(39.5)	299(40.4)	113(15.2)	36(4.9)	1.85
	2019	465	208(44.7)	198(42.6)	43(9.3)	16(3.4)	1.71
고	2021	372	89(23.9)	132(35.5)	93(25.0)	58(15.6)	2.32
	2020	643	185(28.8)	228(35.5)	165(25.7)	65(10.1)	2.17
	2019	349	119(34.1)	151(43.3)	62(17.8)	17(4.9)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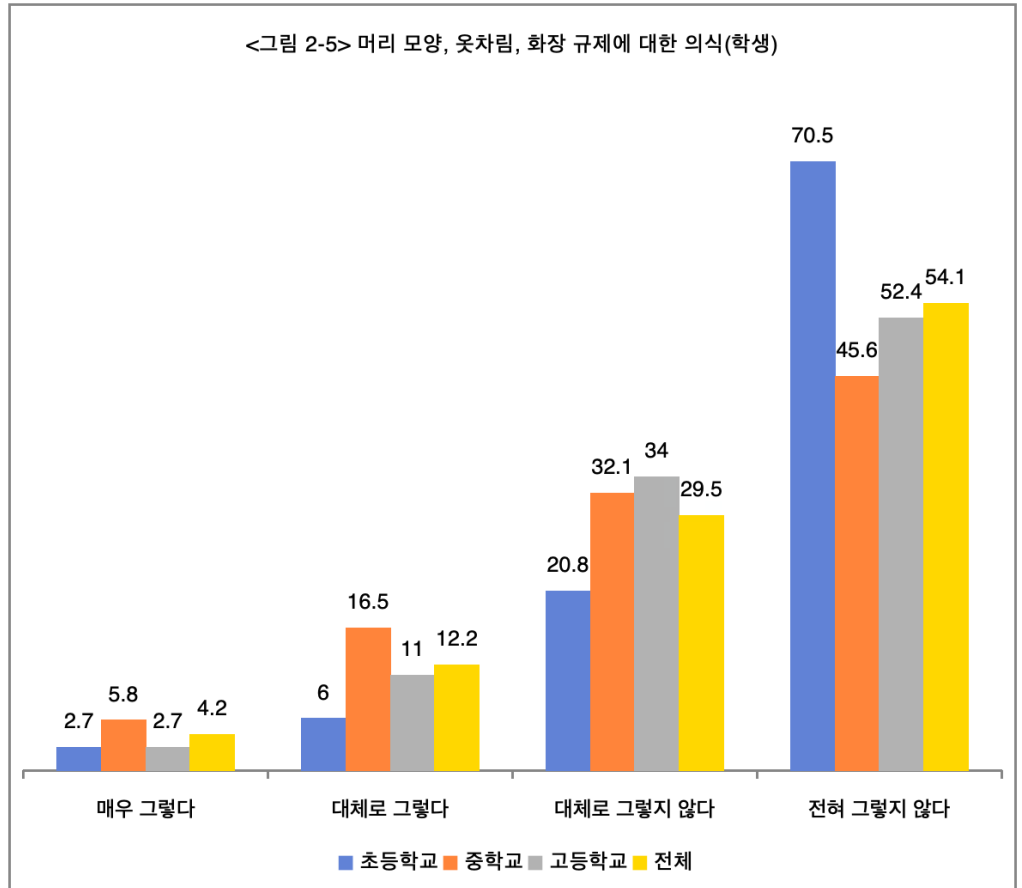
(2)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규제에 대한 의식

문) (공통) 나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그림 2-5>와 같음.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 4.2%, ‘대체로 그렇다’ 1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9.5%, ‘전혀 그렇지 않다’ 54.1%라고 응답하였음. 학교급별로는 규제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초등학생은 91.3%, 중학생은 77.7%, 고등학생은 86.4%이었음.

○ <표 2-7>과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머리 모양 등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2019년 22.8%, 2020년 31.1%, 2021년 16.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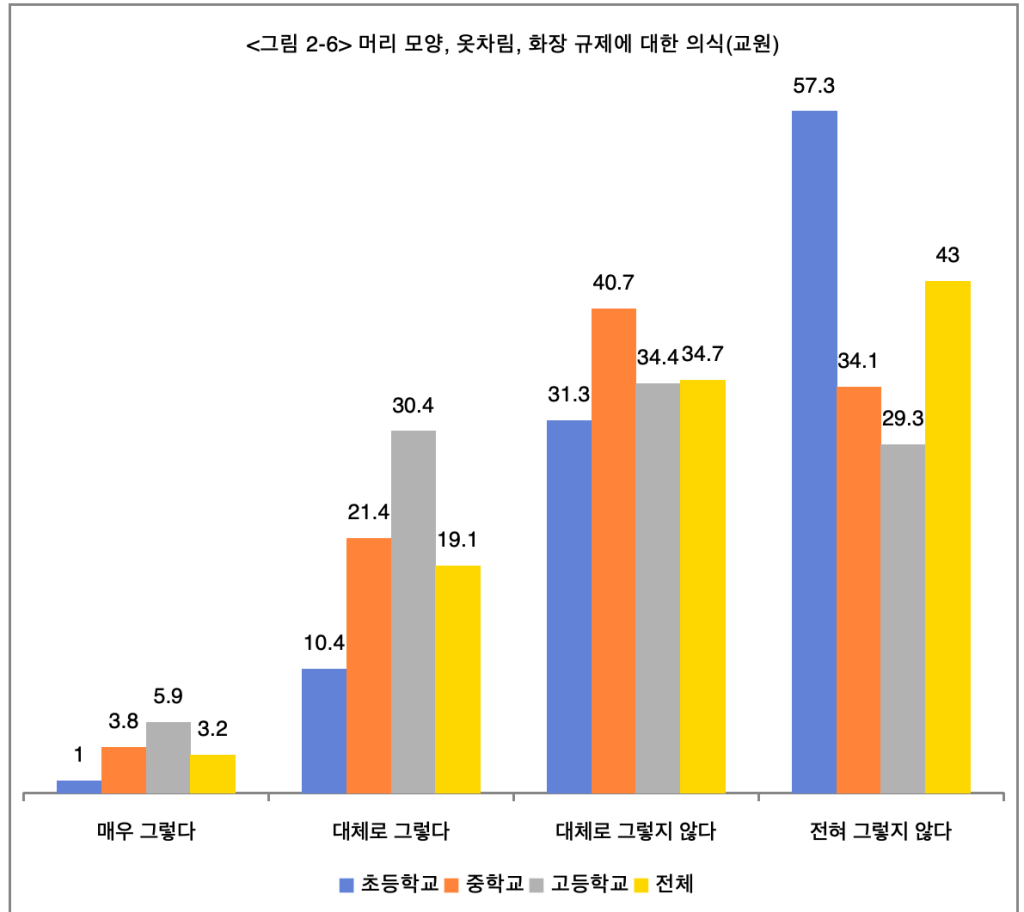
<그림 2-5>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하는지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원들은 <그림 2-6>과 같이 ‘매우 그렇다’ 3.2%, ‘대체로 그렇다’ 19.1%, ‘대체로 그렇지 않다’ 34.7%, ‘전혀 그렇지 않다’ 43.0%라고 응답하여, 학생들보다 규제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11.4%, 중학교 교원의 25.2%, 고등학교 교원의 36.3% 순으로 옷차림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표 2-8>과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머리 모양 등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2019년 36.2%, 2020년 32.6%, 2021년 22.3%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학생들에 비해서는 높았음.

<그림 2-6>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 규제에 대한 인식(교원)



<표 2-5> 나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학생)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 생	빈도수	8,664	360	1,054	2,559	4,691
	백분율	100.0%	4.2%	12.2%	29.5%	54.1%
초	빈도수	2,341	64	140	487	1,650
	백분율	100.0%	2.7%	6.0%	20.8%	70.5%
중	빈도수	4,018	234	661	1,289	1,834
	백분율	100.0%	5.8%	16.5%	32.1%	45.6%
고	빈도수	2,305	62	253	783	1,207
	백분율	100.0%	2.7%	11.0%	34.0%	52.4%

<표 2-6> 나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교원)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 원	빈도수	1,370	44	261	476	589
	백분율	100.0%	3.2%	19.1%	34.7%	43.0%
초	빈도수	588	6	61	184	337
	백분율	100.0%	1.0%	10.4%	31.3%	57.3%
중	빈도수	393	15	84	160	134
	백분율	100.0%	3.8%	21.4%	40.7%	34.1%
고	빈도수	372	22	113	128	109
	백분율	100.0%	5.9%	30.4%	34.4%	29.3%
특수	빈도수	17	1	3	4	9
	백분율	100.0%	5.9%	17.6%	23.5%	52.9%

<표 2-7> 나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학생, 연도별)

단위 : 명, (%)

구 분	연 도	전 체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그렇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	평균
학 생	2021	8,664	360(4.2)	1,054(12.2)	2,559(29.5)	4,691(54.1)	3.34
	2020	14,591	788(11.9)	2,771(19.2)	5,256(32.0)	5,776(31.4)	3.10
	2019	2,703	191(7.1)	423(15.7)	898(33.2)	1,191(44.0)	3.14
초	2021	2,341	64(2.7)	140(6.0)	487(20.8)	1,650(70.5)	3.59
	2020	3,535	168(14.3)	441(21.0)	1,243(34.1)	1,683(30.6)	3.26
	2019	1,187	185(15.6)	228(19.2)	391(32.9)	383(32.3)	2.82
중	2021	4,018	234(5.8)	661(16.5)	1,289(32.1)	1,834(45.6)	3.18
	2020	5,924	372(6.3)	1,416(23.9)	2,168(36.6)	1,968(33.2)	2.97
	2019	1,047	90(8.6)	170(16.2)	371(35.4)	416(39.7)	3.06
고	2021	2,305	62(2.7)	253(11.0)	783(34.0)	1,207(52.4)	3.36
	2020	5,132	248(4.8)	914(17.8)	1,845(36.0)	2,125(41.4)	3.14
	2019	469	38(8.1)	84(17.9)	170(36.3)	177(37.7)	3.04

<표 2-8> 나는 “학생의 머리 모양, 옷차림,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교원, 연도별)

단위 : 명, (%)

구분	연도	전체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그렇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	평균
교원	2021	1,370	44(3.2)	261(19.1)	476(34.7)	589(43.0)	3.18
	2020	2,684	137(5.1)	739(27.5)	1,174(43.7)	634(23.6)	2.86
	2019	1,550	110(7.1)	451(29.1)	677(43.7)	312(20.1)	2.77
초	2021	588	6(1.0)	61(10.4)	184(31.3)	337(57.3)	3.45
	2020	1,300	42(3.2)	254(19.5)	624(48.0)	380(29.2)	3.03
	2019	736	40(5.4)	182(24.7)	342(46.5)	172(23.4)	2.88
중	2021	393	15(3.8)	84(21.4)	160(40.7)	134(34.1)	3.05
	2020	741	43(5.8)	244(32.9)	318(42.9)	136(18.4)	2.74
	2019	465	41(8.8)	149(32.0)	186(40.0)	89(19.1)	2.69
고	2021	372	22(5.9)	113(30.4)	128(34.4)	109(29.3)	2.87
	2020	643	52(8.1)	241(37.5)	232(36.1)	118(18.4)	2.65
	2019	349	29(8.3)	120(34.4)	149(42.7)	51(14.6)	2.64

발제 ②

학생인권조례 10년,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 공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학생인권조례 10년, 학생인권의 현실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체벌 금지를 선언했다. 2011년에는 광주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 체벌을 부분적으로나마 금지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해 온 청소년인권운동이 낳은 유의미한 제도적 개선이었고, 학생인권 현실에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불러왔다.

2013년까지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2020년 들어 충남과 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상당 범위의 지역이 학생인권조례 적용 대상이 된 영향은 컸다. 두발복장규제나 체벌 등이 ‘중·고등학교의 학교의 당연한 풍경’처럼 받아들여 지던 상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 사회 인식의 전반적 변화를 견인했다. 인권침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에 더하여 학생인권에 우호적인 교육감의 당선 등이 맞물리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그 간접적 영향으로 두발복장규제나 자율·보충학습 강제 등의 직접적 학생인권 침해가 줄어든 듯 보인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등장이 곧 학생인권의 전면적, 전국적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실패하였고 주민발안을 통해 발의된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라며 무효화되거나(충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경남)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아직 6곳뿐이다. 2020년 전후로 충남과 제주에서 추가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조례나 최근 발의 시도되는 조례들 중에도, 이전 학생인권조례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더 발전한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차별금지 사유, 강제자율학습 금지, 체벌 금지 등에 관련하여 더 후퇴한 내용을 제시한 사례(제주, 부산, 경기 등)도 존재하고,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조례와 같이 크게 생략, 축소된 유사 학생인권조례의 예도 있어 학생인권조례 형태로 지역별로 추진하는 것의 효용성이 의심되는 국면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 정착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 조례가 기대만큼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

게 된 맥락도 있다.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의 대처로 학생인권조례가 뿌리 내리려던 초기에 발목을 잡았다. 당시 학칙에 용의복장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최근 되돌려졌지만, 학칙을 학교장이 정하게 하고 교육감의 감독을 지운 법률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록 교육부의 무효 소송은 기각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다', '곧 폐지될 것이다', '효력이 없다'라는 등의 악선전이 흔했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률	차이
두발 길이나 모양 제한 경험	66.1%	39.6%	26.5%p
면티/양말 색깔 제한 경험	32.2%	17.5%	14.7%p
치마/바지 길이, 폭 제한 경험	68.7%	55.4%	13.3%p
화장/미용제품 제한 경험	71.8%	62.1%	9.7%p
수업외시간 핸드폰 제한 경험	84.0%	74.4%	9.6%p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23.2%	11.5%	11.7%p
직접 체벌 경험	32.4%	23.5%	8.9%p
간접 체벌 경험	40.6%	30.5%	10.1%p
강제성 서약서, 동의서 경험	24.4%	14.7%	9.7%p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6년 12월) 내용 중에서 발췌. 전국 중고생 6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 5년 전 조사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12월 발표한 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 보장 실태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한 분석을 참고할 만하다.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은 26.5%p 차이가 나는 두발자유 보장 여부이다. 복장자유 부분이나 휴대폰, 소지품 검사 등 관련 항목에서도 9-15%p가량의 차이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더 인권 침해 경험 응답률이 낮았다. 체벌에서도 10%p 내외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학생회 활동, 학칙 제개정 시 의견 수렴, 표현의 자유, 차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결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에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신체와 사생활을 억압하는 학교 규칙을 개선하는 효과는 컸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도 두발·복장규제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 및 제한, 체벌 등의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보다 최근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공식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 역시 두발규제나 체벌 등의 고질적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년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중학생의 21.0%가 '간접체벌'이 자주/가끔 발생한다고 답했고, 종교계 학교 고등학생 중 45.1%가 종교시간에 참석을 원치 않아도 대안을 요청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19년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전국 중고생 2,87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16.5%, '교사에 의해 앉았다 일어서

기, 오리걸음 등 부담스러운 자세 및 동작을 반복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24.4%로 나타났다. 두발규제는 53.0%, 겹옷이나 신발, 장신구 등 복장에 대한 규제는 65.4%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했다.

즉,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은 두발·복장규제 및 체벌 등의 직접적 학생인권 침해를 빈도를 감소시키고 정도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발휘했으나, 학생인권 보장을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서울 지역 학교들 포함 수십 개 학교에 존재하는 속옷, 양말, 가방 색깔 규제, '똥머리' 금지 등의 '황당'해 보이는 용의복장규제 내용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규제들(특히 '속옷 규제')을 둔 학교들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하여 개정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학내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 이러한 규제들의 폐지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어쩌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규제들이 가능했는지를 돌아봐야 하며, 과연 서울시의회나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교육청이 학칙을 개정하도록 적극 나섰을지도 물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제는 학생인권 문제 다 해결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앞서 정리했듯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이기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도 고전적인 학생인권 문제조차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괴리가 생긴 원인으로 ▲과거 워낙 심각했던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현황, ▲선언적으로 학생인권 정책을 발표하는 교육청, 반면 학교 현장에 학생인권 실현을 충분히 강제하기 어려운 법제도, ▲수도권 중심의 사회에서 언론 보도 등이 학생인권조례가 미제정된 지역을 소외시킨 결과, ▲청소년의 삶의 문제와 학교 현실에 무관심한 사회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

초·중·고·고등학교 학생인권법제정연대는 2021년 11월,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 사안 중 두발규제, 겹옷 규제, 치마 관련 규제, 속옷 규제, 휴대전화 소지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이 학칙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다. 질의한 항목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복하여 또는 최근에 권고한 사안, ▲교육부 등에서 개선 지도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최근 청소년 참정권 관련 법 개정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을 추려서 정했다. 이는 학생인권 실태를 알아보는 동시에, 교육청들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실태를 파악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돌아온 답변들을 보면, 시·도교육청 중 관련 학칙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은 8곳뿐이었다.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까지 파악, 집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강원, 경남, 인천 교육청을 제외하더라도 6개 교육청은 대표적인 학생인권 사안에 관련해서도 학칙 현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자료를 회신하긴 했으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전 영역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7 (2020기준)	43	288	중 36 고 24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겉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 제한하는 학칙	4 (2020기준)	통계 미보유	106	중 5 고 8
치마 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0	7	130	중 2 고 10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0	206	미파악	중 27 고 18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0	28 (2021내 개정 예정)	미파악	중 6 고 8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 일괄수거 학칙	13	166	82	초 104 중 43 고 25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3 (후반기 삭제 예정)	122	77	초 60 중 41 고 30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3 (후반기 삭제 예정)	130	미파악	
비고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 시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353 (복장 규정도 포함)	55교 중 4교 제·개정 이행	21	52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겉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 제한하는 학칙	129	55교 중 4교 제·개정 이행	6	추후 파악 예정
치마 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치마와 바지 선택 규정이 있는 학교는 210	9교 중 9교 제·개정 이행	1	3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자료 부존재	1교 중 1교 제·개정 이행	11	추후 파악 예정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두발규제 관련 집계에 포함됨)	2교 중 2교 제·개정 이행	0	추후 파악 예정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 일괄수거 학칙	412	72교 중 5교 제·개정 이행	28	68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자료 부존재	43교 중 4교 제·개정 이행	2	17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자료 부존재	13교 중 1교 제·개정 이행	4	추후 파악 예정
비고		2022년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의 고등학교 모니터링에 따른 제·개정 권고		

2021년 11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교육청을 제외하고 학칙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수치 등을 회신한 8개 교육청의 답변만 정리했다.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경우에도 학칙 현황을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정확한지는 의구심이 든다.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실시하여 인권 침해적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답했으나, 교육청이 규정을 점검,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안내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실제로 학칙 조사 결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학교자체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집계 자료 역시 학교 자체 점검 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중학교 700여 곳 중 두발규제가 있는 학교가 43개밖에 안 된다는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기 어렵다(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조사에서도 중학생 중 머리 모양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0%에 달한다). 두발복장규제 등에서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입장인 학교 측의 자체 점검 결과에 의존해서는 학생인권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는 조사한 결과는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맞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인권침해가 빈번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교육청들도 학칙을 조사,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과연 실효성 있게 조사, 점검, 감독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예를 들면 대구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급별로 학생생활규정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개선권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칙 존재 여부를 집계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대구의 수많은 학교들에서 두발규제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 두발규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은 명확해 보인다.

대구 영남고등학교의 사례는 학생인권이 놓인 문제적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대구 영남고의 두발규제와 두발단속에 스트레스를 받은 영남고 재학생들은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국민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구교육청 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획일적 두발규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두발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영남고는 권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영남고 학생이 교육청에 민원을 낸 것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 측이 인권위 권고 이후로 두발규제를 개정하여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면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학교에서 논의 과정에 잘 참여해보라는 답변을 했다. 영남고는 인권단체에서 반복적으로 학교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학교장과 면담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고 언론에 문제가 여러 차례 보도된 이후 최근야 두발규제에서 길이 규제를 없애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교육청들은 겉으론 학생인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감독하거나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내서 개선 권고를 받더라도 학교에서는 이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선’을 긋는 학생인권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에서의 자의적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 대표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개정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조항을 마련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는 제정을 촉진시키고, 이미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 ▲ 두발복장규제, 체벌, 종교강요, 성희롱·성추행 등 대표적 학생인권 침해 행위 금지 명시
- ▲ 학생 징계 사유를 지금보다 더 한정하고, 징계 시 재심 청구권 등 보장
- ▲ 학생자치활동 보장, 학생자치기구 법제화
- ▲ 학칙 제·개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학생 참여 보장

▲ 학생인권 실태조사 등 교육청의 의무를 명시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 참고)

이러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인권에 관해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학교가 넘어선 안 될 선은 어디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구제 절차와 교육청의 책무가 있는지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학칙은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문제들에 대해 파악도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관해 수십 년째 비슷한 권고를 반복하고 있어도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도 부지기수다. 아예 학생인권에 관해 제대로 ‘선’조차 그어져 있지 않고 어떤 것이 ‘선’을 넘은 것인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학생인권 침해가 개별 학교나 교사의 사소한,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다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랜 관행이고 악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체벌 등 학생인권 문제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인권법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학생인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생인권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가 되었든, 시행령 개정의 형태가 되었든 학생인권 문제를 개별 학교 또는 개별 지자체-교육청에 맡겨놓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권고한 학생인권 문제들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칙을 전수 조사,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체벌 등 직접적 학생인권 침해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지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관련 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행할 때이다.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학생인권조례의 근거와 반인권적 학칙 개정 근거 마련

학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칙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부·교육청이 학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학칙의 제·개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2. 학칙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⑤ 학칙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발복장규제, 소지품검사·압수, 종교 강요, 성희롱 등 대표적 학생인권침해 금지

학생인권법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듭니다. 나아가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명백히 사라져야 할 학생인권침해 행위들(체벌, 두발복장규제, 각종 차별, 보충·자율학습 강요, 종교 강요, 성추행 등)을 금지함을 명시합니다.

제17조(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생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단,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5.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을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단, 법령이나 고시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7. 성적 괴롭힘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 요구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동아리, 학생회 등 자치활동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동아리 설립을 비롯해 학내 자치 활동,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자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생회의 권한과 역할 역시 법적으로 보장하여 학교 운영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교원,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던 기존 법률에, 학생 대표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제17조의3(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동아리, 소모임, 언론활동 등 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7조의4(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징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안 발의
2. 건강·안전 등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위원 선출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
 6.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 ⑤ 총학생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⑥ 학생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퇴학 외의 징계에도 재심의 권리 보장 등

현재의 법률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 포괄적인 사유라서 학교가 합리적 이유 없이도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퇴학 외의 징계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징계사유를 제한하여 학교생활 중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퇴학 외의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학생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4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생인권침해 구제 기구 설치, 교육감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의무 명시

지금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청 민원 등 외에 전문성 있고 인권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옹호관을 교육청에 설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을 구제하고 인권침해를 조사, 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감에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실태 조사나 교육, 정책 수립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18조의5(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실시
2.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3.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4.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5. 학생인권정책 심의를 위한 민관합동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제18조의6(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설치·운영) 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7(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8조의8(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치)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ㅉㅉ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에도 학생인권 침해가 계속될 염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해자,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의 중지
 2. 학생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토론 ① 우리가 보는 세상

- 정소정,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영어중국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소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학생인권 토론회에 나와 이 입장을 밝히게 된 계기는,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겪는 생활 규제,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 자치의 현실을 말씀드리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1.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태도

이 토론회가 열리기 얼마 전,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가는 오후 10시경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내에 갑작스런 방송에서, 요즘 야자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몰래 교실에서 나가 다른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11시 전까지 학교 건물에 있는 다른 문은 모두 잠그고, 유일하게 열린 문 앞에 서서 감시하고 있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방송을 끝나치면서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퇴학시킬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부디 학생의 본분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규정에 따라 퇴학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마음대로 퇴학을 결정할 수 없는데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 학생의 본분이란 것은 교사의 말에 복종하며 불만 없이 감금된 상태로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인가요?

2. 교사들의 편파적인 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에 대한 규제는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와 함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또한 교복 자율화 등 학생 복장 규정이 많이 완화된 대신, 다른 문제들이 부각되었습니다. 작년 저희 학교에서 용의복장 규제는 오로지 인성인권부장교사의 재량이었습니다. 여러 번 복장 규제에 걸려서 경고를 받은 학생과, 평소 품행이 바르고 단정한 학생이 같은 귀걸이를 착용하고 똑같이 짧은 바지를 입더라도 눈에 난 학생의 소지품만이 압수되고 제한되었습니다. 담당 교사의 주관적인 시선이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 즉 야자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후 11시에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까지, 안전을 위해 저희는 책상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나 학원에 가는 등의 사유 외에는 학교 바깥 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기기 사용도 제한됩니다. 저는 당황스럽게도, 이 토론회에 나오기 위해 선생님과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날 야

자 감독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메시지를 못 하도록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온건한 성정이셔서 경고로 끝났지만, 엄격하신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야자시간에 과목 공부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보시면 바로 압수하기도 합니다.

3. 허수아비 학생회

이러한 사건사고는 전부 자율학습을 강제하면서 생겨나는 번거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자 시간에 기숙사로 돌아가 공부할 학생은 자습실을 이용하고, 공부하기 원치 않거나 몸이 좋지 않은 학생 등 휴식을 원하는 학생은 방으로 돌아가 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내고는 하는데, 돌아오는 말은 항상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래’, ‘너희 안전 문제 때문이야’ 따위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끼리만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은 늘, 학생회는 열려 있으니 불만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회로 넘기라고 하십니다.

작년에는 저녁시간이 끝나고 거의 네 시간의 야자 동안, 중간 쉬는 시간이 겨우 10분이었습니다. 이는 매점에 다녀오기도 살짝 버거운 시간입니다. 결국 학생 측에서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회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였기에, 학생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20분에 찬성하는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생님들의 격렬한 반대로 15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학생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서도 저희는 소외됩니다. 저희는 기숙 학교인지라 기숙사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원래 작년 초반에는 처벌 규정 중에서 ‘1주일 퇴사 조치’ 조항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웬 종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규정을 심각하게 지키지 않아서, 다시 1주일 퇴사 처벌을 실시하겠다는 통지와 함께, 비동의 칸이 없는 오직 동의만 하도록 시킨 동의서였습니다. 심지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기숙사 실태 조사마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들려온 방송의 목소리가 말했는데, ‘학생 여러분의 동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꺼내며 의아해합니다.

4. 학교 시스템 문제

저는 지금 많은 사례들 중 일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목도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어찌저찌 의견을 겨우 수렴하여 교사들에게 가져다 주면, 이걸 되고, 이걸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바꾸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구조도 아니고, 더더욱 민주적인 학생자치도 아닙니다.

5. 멀고 먼 학생 자치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권고하는 학교규정개정절차에 따르면, 처음 단계에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학생 위원을 40% 이상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최소한으로 학생을 구성하여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저희를 보호하고, 공부에 집중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한다는 명목 아래 한 목소리

를 내고 있는데, 전부 단합하더라도 과반수도 넘지 못하는 저희들은 저희끼리마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반수를 넘기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6.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생 자치와 규정개정

방금은 직접적으로 교사와 마주하게 되는 학생회 입장에서 말하는 학생 자치의 현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학생 자치입니다. 저희는 일단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완료되었다고 써져 있는데, 우리는 기억조차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하며 어느날 문득 게시판에 보면 무언가 개정되었다는 소식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구멍난 절차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 갖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커녕 교사조차 학생인권조례와 학교규정개정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학생인권과 조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규정을 만들고 올바른 절차를 따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과 교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7. 친구들이 말하는 요즘 학교, 마무리하며

아마 선생님들은, 지금 어쩌면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학생과 교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학교에 뿌리박힌 상하구조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세상에서 수평을 추구하려면 당연히 한쪽으로 더 기울어져야 맞는 것인데, 기울어진 곳에서 기울어진 평등만 바라보면 근본적으로 수평을 이룰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학교 친구들의 많은 말을 듣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분명 이 학교를 더 낫도록 바꾸어 나가려면 저희가 더 많이 모여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나란히 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전에, 저희는 준비 기간인 학교에서 올바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저희 뜻이 전달되었길 바라며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토론 ②

생활규정 개정, 끝이 아닌 시작이 되도록

- 정다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전북의 많은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학교생활규정에서 휴대전화 및 용의복장 규제가 사라지는 등의 일부 개선이 있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이 갈등의 요소나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여기는 목소리,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을 역으로 학생인권 침해에 이용하는 등 기존과 다른 양상의 인권침해가 백래쉬(반격)로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평인연 활동가들은 전북의 여러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학교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나 거치는 과정도 달랐지만,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생인권 관점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견 수렴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혹은 다수 항목이 삭제되고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쟁점이 되는 두발복장 규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각 학교에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핑계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 관점에서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생의 참여를 통해 바뀌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40% 대 60%의 갈등 끝내기

익산에 위치한 이리북중학교에서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컨설팅을 거쳤고,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규정개정 절차를 따르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회 주도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청 예시안을 바탕으로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지속적인 회의와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체 학생 80%의 찬성을 얻는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된 쟁점이었던 용의복장 규제와 전자기기 사용 개정안이 반

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사 및 학부모 위원의 반대로 현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리북중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요약한 표입니다.

	제24조 [용모]	제30조 [전자기기 사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복은 정복을 원칙으로 하며,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 할 수 있다. ②복장의 명찰은 교내에서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신발은 등하교 시 운동화를 착용하고, 서클렌즈 착용 및 두발 염색을 금지한다. ④귀금속 착용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귀걸이 (부착형- 한쪽 귀당1개)만 허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공기계 포함), 녹음기,mp3, 각종 전자기기 등은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가)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가져왔을 때는 담임선생님께 아침조회시간에 반납하고, 종례 후에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회수한 다음 종례 시 돌려줌 (2) 휴대전화기(공기계 포함) 및 각종 전자기기 소지 적발 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3)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개정안 (교육청 예시안, 학생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학생은 교복 착용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다.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사는 교육활동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생은 그 요구를 따라야한다. ④ ①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동안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 할 수 있다. ⑤ ④의 규정이 3회 이상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시험기간 중 전자기기를 지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학생 위원 의견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예시안에는 용모 제한이 없고 권리 조항만 있음. - 불편하고, 취향에 맞지 않음. - 질병(아토피)으로 인하여 교복 착용을 위해 치료가 필요함. - 타 학교의 경우 서클렌즈 착용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예시안을 실행해야 함 -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단서조항을 제시했음.
교사 위원 의견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오랜 기간 개정을 통해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개정에 신중해야 함 - 교복은 학생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편의성은 고려 사항이 아님. - 편의성을 위하여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생활복 착용을 권하고 있음. - 사회성을 기르고 건전한 성인으로 나아가는 법을 익히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규정을 지켜야 함. -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신발, 렌즈 착용 규제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과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도 존재함. - 학교 환경을 고려해 협의된 것이며, 인권침해가 아님. - 학생은 아직 판단력이 미성숙함. - 정규교육활동 시간 중 휴대폰 분실에 대한 책임 여부가 불분명함.
학부모 위원 의견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나, 학생의 신분을 보여주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함. - 서클렌즈는 성장하는 청소년의 눈에 치명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상권 침해, 교권 침해,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음. -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 - 고가의 휴대폰 소지는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함. - 학생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함.
결정	6:4로 현행 유지	6:4로 현행 유지

1) 전라북도교육청, 2020 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안내서 (2020)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20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중 학교생활규정의 원칙
 - 학생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
 - 권리의 보장은 최대한으로 하되 제한은 최소한으로 함

전라북도교육청¹⁾에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 위원을 4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이리북중학교에서의 경우과 같이 학생인권 관점에서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학생 위원 40%와 학생/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규정을 바라보는 교원 및 학부모 위원 60%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학생인권 대 통제의 구도가 아니라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어떻게 하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합니다.²⁾ 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구성원과 특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의 원칙 및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2021 방문 조사 결과보고서 - 학생자치 실태조사 :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중심으로

또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2021년 조사한 바³⁾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40개 학교 중 90%를 차지하는 36개 학교에서 학교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생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는 12개 학교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북도 내 많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에 있어 학생의 참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여부

조사 대상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위원회현황(위원회 구성)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운영(내부기안)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학교	유(%)	36(90)	유(%)	19(52.8)	유(%)	12(65.2)
					무(%)	7(36.8)
	무(%)	4(10)	무(%)	17(47.2)	-	
			-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2021 방문 조사 결과보고서 - 학생자치 실태조사 :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려면

학교생활규정 과정에서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담당 교사와 소통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여도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정당하고, 학생이 제출한 개정안 혹은 학생인권 관점의 개정안이라 하여 합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북의 많은 학교에서 학교의 전통과 구성원의 합의를 내세워 문제적 규정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문 21진정034350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⁴⁾ 김제지평선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교내 일과 시간과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규정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개정된 생활규정의 제30조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려 교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학생인권조례의 취지 및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반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기존 전자기기 관리 규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는 귀교 시에 교무실 보관함에 보관하고, 귀가 시에 받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 등 교육 활동이나 식사시간, 방과후 학교 등 시간에 자치활동 등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 할 경우 꺼내서 사용하고 바로 다시 보관함에 보관한다. - 휴대전화를 제외한 노트북, 태블릿, 전자책, 전자사전 등 액정화면형 전자기기는 08:30 이 후 교무실 보관함에서 받아 가서 스스로 사용.관리하고, 일과가 끝나고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 에 다시 보관함에 보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업시간 동안 휴대전화는 교무실에 보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지평선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진정학교측은 이러한 제한조치에 대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 규정의 제개정 과정이 형식적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당연히 수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많은 학교에서 지평선고등학교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성원의 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내의 학교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참고해 규정 개정 에 나서기를 기대하며, 규정개정 과정에서 인권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 일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 관점에서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이처럼 쉽지 않은 탓에, 학교 안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설득하던 분들이 지치는 걸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담당 교사가 학생인권 관점이 반영된 개정안을 계속 반려하는 탓에 개정 운동을 시작한 학생회 임원들이 다음 학년이 될 때까지도 규정이 개정되지 못한 경우까지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학생자치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목소리내도 변하지 않으려는 학교 현장을 보며 학생인권 없는 학생자치는 허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바꾸기 위해 낸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더 귀기울이고 더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론 ③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것들

-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목차

-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 생활규정 컨설팅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들
- 3. 조사와 컨설팅이 놓치고 있는 것들
- 4. 전북 학생인권이 가야할 길

저는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1년에 전북에 왔습니다.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아 대안 학교(인가)인 김제 지평선고등학교에 교사로 온 것인데요, 겉으로는 대안교육을 표방하면서 실상은 수많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계기로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학생인권·학생자치·생활규정과 관련한 강사 및 컨설턴트 활동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전교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문은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1.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염규홍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님의 발제문을 잘 보았습니다. 평생을 인권 옹호, 인권 신장을 위해 살아오시고 전북 교육현장에서 인권옹호관으로서 그리고 다시 조사관으로서 기여하고 계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 일단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규칙 제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계표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모른다'의 응답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규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의견이 투입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규칙 제개정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 △규칙 제개정 절차에 참여하는 학생 대표자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답변과 '모른다'를 합치면 절반에 육박하며,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규칙 제개정 과정에 대한 학생 주도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발,복장,화장에 대한 규제는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여전히 널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수거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수거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학생인권 제한 정도가 가장 강한 중학교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도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학교 수업시간 자체가 과정(수행)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규정 개선과 컨설팅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인권의식 항목을 보면, ‘휴대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응답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특히 교원의 경우에도 ‘그렇다’보다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은 현장의 인식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생활규정 지원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인권위 결정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인식 변화의 속도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의식 항목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체벌할 수 있다’에 대해 교원보다 학생의 동의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조사응답자의 편향도 작용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평화교육이 더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 중 발제문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겠습니다. △차별경험이 15%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높아졌는데,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입시교육의 압력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에서 2019년 16.9%, 2020년 12.3%, 2021년 7.9%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인권위 체벌금지 권고가 나온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8%나 체벌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체벌 범주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엎드려뺨쳐’나 ‘운동장 돌아’, ‘깜지 쓰기’도 체벌이고 많은 학교에서 이런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문입니다. 체벌은 당연히 사라졌겠지, 하는 안이함으로 중요한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원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항목은 조사 설계에 있어 좀 더 세심한 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원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학생이 유발하는 인권침해와 관리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유발하는 인권침해의 종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라는 말로 뭉뚱그리게 되면 교원 인권침해의 주요 유발자로 학생이 지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학교의 인권상황 항목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강요’와 ‘반성문·각서 강요’가 높게 나온 것은 큰 문제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정소정 학생님이 야간자율학습 강제를 지적한 것까지 포함하여 생각하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생 자유권 침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및 ‘0교시’ 강제 시행에 대해 예산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이른바 ‘0교시’를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선행학습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각종 예산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거나 정규 수업 시간에 이어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인 경우 학생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 전체 학생 참여율 평균보다 10%p 이상 높으면 학생참여 강제를 금지한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학교가 정한 정규 일과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이전에 학생 전체를 등교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특히 방과후학교 강좌의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집중지도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일정기준의 성적이나 등수의 학생에게만 차별적인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단계로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하여 현장 조사와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 지도를 실시하고 1단계 이후에도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 이후에도 지침 위반이 지속되는 학교는 각종 연구·시범 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및 교원 표창 대상에서 배제하고 환경개선 사업비 등의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절반 이상의 기숙사에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 학생자치회가 선도부의 역할을 하는 학교가 일부 있으며, 방을 불시점검하는 학교도 7곳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등, 기숙사 인권침해가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비율이 중학교 88.9%, 고등학교 30.6%로 높게 나오고 있는데, 생활 공간이자 휴식공간인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생활규정 컨설팅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들

저는 주로 중고등학교의 생활규정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컨설턴트들의 현장 방문과 전수조사 수행, 체크리스트와 예시안 보급은 관내 많은 학교들의 생활규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현장 방문 컨설팅(코로나 시기에는 서면 컨설팅)은 전체 학교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학교는 주로 △생활규정 담당 교사나 관리자가 개정 의지가 있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정한지 오래되었거나 학생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전수조사시 문제

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후자가 강조되어야 하는데, 컨설팅이 의무이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자의 경우에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의지가 있는 경우에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컨설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에 업무담당교사만 참여하고 관리자와 학생 대표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학교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고사,생기부 관련 컨설팅에 비해 권고력이 약하다(개정 안해도 그만) △본문 부분은 도교육청 예시안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정작 과거 문제투성이의 징계기준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한다 △교사들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내용이 많다 △생활규정의 역할을 하는 다른 규정들(예를 들면 기숙사규정, 교복규정 등)이 있는데 물어보기 전에는 보여주지 않는다 △여전히 학생자치의 영역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용모 부분과 휴대전화이지만, 사실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에 서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아래 참조). 최근에는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활동 연령이 16세로 낮아지면서 학생의 정치 참여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규정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컨설팅에서 주로 논의하는 것들을 낱것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하겠습니다.

예시안 ①

○ 학교폭력예방(18~19조) 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것은 정리해서 간략하게

○ 휴식시간(20조) 사항 - 휴식시간에 쉬는 건 학생 자유. 따로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음.

- 6항 : 휴식시간에 자전거, 스케이트, 보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9항 :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에서 '등'이 가지는 확대해석 가능성.. 그러면 보드게임은 할 수 있는지? 장기는 둘 수 있는지? 그렇다면 다시 고려했을 때 카드놀이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 이성교제(23조) 사항

- 이성교제 조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음. 규제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성교제'라는 표현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표현임.

-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는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될 여지가 많음. (예를 들면 손잡고 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금지하게 되는 것인지 불분명함)

○ 동아리활동(24조) 사항

- 동아리활동은 학생자치의 영역이므로 제한 조항이 있으면 안 됨.

○ 전자기기(29조) 사항

- 가장 쟁점이 되고 있으리라 짐작. 일괄수거는 인권침해. 별표3에 수거 동의서가 있지만 규정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수거 동의서 효력 없음.

- 원칙적으로 압수는 불법.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도가 적절함. 압수 시 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다
툼 생길 수 있고, 압수했다가 분실하면 교사가 책임져야 함.

- 기본적으로 전자기기는 사유재산이며, 정보통신권은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생활 자유 범위에 통신기기 포함됨.

-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서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음.

○ 보호자의 의무(32조)와 보호자의 책임(34조)

- 보호자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규정에 필요하지 않음. 학생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민법상 당연한 원칙이므로 생활규정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음.

○ 안전지도(38조)와 진로지도(39조)

- 각각 안전지도 매뉴얼과 진로지도 교육계획에 들어가면 됨. 생활규정에 필요 없음.

○ 어려운 표현의 순화

- '개전의 가망(49조)' 같은 표현은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움.

○ 징계기준에 인권침해적인 내용은 모두 삭제

- 불법집회 또는 써클 운영한 학생,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하거나 출연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정치관여 행위한 학생 등

○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어 삭제

- 용의단정, 선동, 학생다운, 불순한, 불량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가망이 없다 등)

○ 이중처벌, 이중불이익 금지 원칙

- 시험 거부, 무단 결석, 경찰 연행 등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폐지해야 함.

○ 그린마일리지 별점 항목리스트에서 보이는 문제

- 수업준비 소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숙제를 못해와도 별점을 주는지?

-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점을 주는지?

- 컴퓨터, 엘리베이터 사용하는데 왜 교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기본 예절 부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 카드를 소지하면 안 된다는데 교육용 또는 취미용으로 안되는 것인지? 실내에서 왜 공놀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 실내에서 학생이 없고 바쁘면 뛰어갈 수도 있지 않은지?

- 왜 다른 학급에 출입하면 안 되는지?

- 선도부는 폐지해야 함. (학생 선도는 교사의 업무임. 이를 학생이꿈이, 바른생활부 등의 명칭으로 학생에게 전가하면 안 됨)

○ 지난 개정 후 내용에 언급되는 조항 번호가 연계 수정되지 않았음.

- 예) 제52조: "제75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확정된 징계" --> 75조, 76조는 존재하지 않음.

제55조: "제80조에 의한 봉사활동은" --> 80조는 존재하지 않음.

예시안 ②

- 제9조 개성 실현 권리에서 교복 착용 시기와 방한용 덧옷 등의 자율화 조항이 필요함.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은 엑셀 파일을 보면 동하복 교차기간에 자율선택기간을 달라는 학생의 견과 교복 위 겹옷 착용을 허용해달라는 학부모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함.
- 학부모 의견과 개정 전 규정, 제21조 용모 부분을 통틀어 함께 살펴보면, 여학생 동복에 바지 디자인이 없어서 바지-치마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남학생은 파랑, 여학생은 분홍으로 성차별적이며(최근 교복의 추세는 성중립성을 추구함), 생활하는데 불편하여 생활복 디자인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제21조 2항의 내용을 보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용모 제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한 조항은 반드시 규정에 명시하여야 함(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성문화된 규정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임).
- 제14조 4항에서 ‘공손한 언행으로’라는 표현이 자의적임. ‘당당하게’라고 바꾸면 좋겠음.
- 제19조에서 휴식시간은 학생들의 권리이므로 학교는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고 학생은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규제로 느껴질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함. (교정에서 스케이트나 보드를 타면 안되는지? 인라인과 보드도 훌륭한 취미활동임)
- 제22조 3항에 집회를 학교장이 지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집회의 사전 검열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함.
- 제24조 전자기기 사용 부분과 학생·학부모 의견을 보면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속한 개정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을 조회 때 제출받아서 종려 때 내어주는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시정하라고 해마다 권고하고 있음(언론 기사 참고). 또한 1항에 학생자치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쳐 휴대폰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자치회가 학생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으며 전자기기 제한 조항 역시 반드시 규정에 명시해야 함.
- 제37조 1호 ‘학교내 봉사’에서 ‘교원의 업무 보조’는 반드시 삭제해야 함.
- 기존 규정의 ‘징계기준표’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인지 궁금함. 필요해서 가져와서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음. (필요하다면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모두 삭제해서 새로이 만들 필요 있음)
- 학생회 규정 제7조 6호 ‘행복지킴이’가 선도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학생회에는 선도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으면 안 됨.
- 학생회 규정 제11조 1항에서 선거관리위원을 교사들이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음. 마찬가지로 제19조 5항에 대의원회를 학교장이 소집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학생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음.

예시안 ③

- 제21조 용모 부분에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별지의 용의규정, 징계 기준 등을 보면 일괄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에는, “제한할 경우에는 규정개정위원회에서 정하고~”라고 적어놓을 게 아니라, 그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처벌 내용을 다루는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성문법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규정개정심의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 별표1의 용의규정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염색·화장·신발·악세사리 등 대부분의 개성실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는 이러한 용모 제한 규정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결정·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복 규정에 있어 치마·바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교복 착용 시기도 (추위나 더위를 더 잘 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선택·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방한용 덧옷의 착용여부·색상·형태 등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교복사양서를 보면 통이 좁고 불편해 보입니다. 요즘은 성중립성이 강조되는 시대여서 블라우스보다는 폴라T 같은 편한 생활복 스타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 치마나 반바지의 길이를 오금선에 맞추라는 등의 길이 규제도 너무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별표1의 ‘학생복장 및 용의 규정’의 모든 내용은 폐지해야 합니다.
- 제24조 1항 휴대폰을 조회 시간에 걸어서 종례 시간에 나누어주는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수업시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참고)
- 제33조에서 “수업권 침해로 인한 교실에서 분리조치 가능” 문구는 삭제해야 합니다. 학생의 수업권은 매우 중요하므로 분리조치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승인되어야 합니다.
- 제34조 5항 소지품검사 항목에서,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소지품 검사에 대해 (여학교이므로) 여교사가 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신체 내 휴대가 아니라 사물함이나 책상속에 보관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교사가 검사했을 때 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을 안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회 임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라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학생회 임원은 학생자치 활동을 하는 것이지, 교사의 소지품검사 업무를 보조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제35조 위반자에 대한 전자기기 제출·보관은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하교할 때는 줘야 한다는 뜻). 이 내용을 반드시 35조 조항에 명시해야 하며, 별표3 징계 규정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2회적발시 7일 보관이나, 3회적발시 20일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과도하게 긴 기간이므로 적절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제38조 징계의 방법 1항 교내봉사에서 ‘교원들의 업무 보조’는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징계의 방법으로 교사 업무를 보조시킬 수는 없습니다.
- 별표2 ‘징계기준표’에서 교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거나 학생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여기서 말하는 공중도덕은 어디까지?
- 학교 행사에 이유없이 불참한 학생: 정규 수업이 아니라면 참여를 강제할 수 없음.
-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그러면 교과서를 안 가져와도 징계하나요?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부당한 지도에는 불응해야함.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으로 수정해야 함)
- 경찰에 연행 후 석방된 학생: 촛불시위에 갔다가 연행될 수도 있는데요.
- 연행이 불량하여 개정의 정이 없는 학생: 불량 기준은?
-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불손 기준은?
-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불온문서라는 단어 자체가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아요.
-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금지된 과외가 뭐인가요?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그러면 숙제를 깜빡해도 징계하나요?
- 수업을 거부한 학생: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업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죠.
- 이유없이 시험을 거부한 학생: 시험을 보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죠.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4.19 시절에 있을 법한 조항...
- 수업이나 학교 행사를 거부하거나 선동한 학생: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죠.
-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외출...: 요즘은 ‘무단’이 아니라 ‘미인정’,
미인정출결 처리 자체로 불이익을 받은 것임. 이를 재차 징계하면 이중처벌 논란.
-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가출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탈출인 경우가 많음.
- 불량서적이나 음란서적 등을...: 불량 기준은?
-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대표적인 자의적 처벌 조항. 무엇이 불미스러운 행
동인지? 무엇이 학교 명예 훼손인지?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무엇이 불건전한 이성교제인지? 학생들에게는 성
적자기결정권과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있음.
- ‘집단’ 항목의 모든 조항 : 시대에 맞지 않아요.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는 세대입
니다. 그리고 대외행사 나가는데 왜 학교장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 다음은 학생회 규정입니다. 학생들이 학생회를 구성하고 운영해가는 데 있어 교사의 개입과 간섭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자치의 원리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내용들은 삭제해야 합니다.

- 제5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동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 제9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임명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당선증을 줍니다.
- 제12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22조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해야 한다”

예시안 ④

- 제7조 복장 부분에서, 입는 시기를 기온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필요함. 치마/바지 착용은 동복 하의를 입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혹시 동복 하의의 재질이 덥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며(덥다면 얇은 바지 또는 반바지 착용 허용해야 함), 동/간/하복 착용 시기는 개별 학생의 판단에 맡겨야 함.
- 제8조~제13조의 내용은 최근 추세에 맞추어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두발 제한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실용적인 가방’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어서 교사의 자의적 제한이 가능. 체육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육복 착용을 허용해야 함. 그밖에 신발, 양말, 장신구 제한 내용이 모두 과도함. 명찰 채용 역시 강요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학년별로 명찰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제16조 - “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도교육청 예시안에서 따와서 그대로 들어 가있는 것 같음. 수정이 필요함.
- 제17조 전자기기 사용 부분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을 조회 때 제출해서 종례 때 내어주는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시정하라고 해마다 권고하고 있음(언론 기사 참고). 또한 5항에서 일정기간 압수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음. 휴대폰은 고가의 사유재산 이어서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를 압수한다는 것은 강요, 절도 및 분실시 교사의 배상이 뒤따라야 함. 도교육청 예시안에서는 하교시에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하고 있음.
- 제29조 - 도교육청 예시안에서 따와서 징계기간이 ‘○○’으로 그대로 들어가있음. 기간 지정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5일)
- 별표 ‘징계기준표’를 보면 교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내용이 많음. 그런 내용들은 모두 삭제 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내용으로 대체하여야 함. (언행 불손, 불경한 언행.. 이런 표현은 학생이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하고 질문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해야 함. 수업태도 불량.. 밀도끝도 없는 표현임. 미인정 결석 등 출결은 그 자체로 불이익 이기 때문에 이를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임. 가출을 징계대상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가출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우가 많음). 대외행사 출품,참가에 왜 학교 의 허가가 필요함? 전체적으로 숙고하여 징계기준표를 개정할 것을 권함.

예시안 ㉔

- 제21조 용모 조항은 최근 추세에 맞추어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두발 제한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동하복,춘추복 착용 시기를 굳이 날짜로 지정해놓을 필요는 없음.
- 제24조 전자기기 사용 부분도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을 조회 때 제출받아서 종례 때 내어주는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시정하라고 해마다 권고하고 있음(언론 기사 참고).
- 제2절 시상 부분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생활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 제36조 현장실습 준수사항에서 학생의 노동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내용과 표현을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49조 1호 '학교내 봉사'에서 '교원의 업무 보조'는 반드시 삭제해야 함.
- 제54조 2항에서 '남녀 혼숙 또는 남녀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자'라는 내용은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임신한 학생, 성적소수자 등을 차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적절한 수정이 필요함.

예시안 ㉕

1. 학교생활규정이 너무 길고 양이 방대하여 위압적입니다. 학교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인쇄해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명단, 회의록 양식, 서식 등은 뒷부분으로 빼거나 담당교사가 파일로 갖고 있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도교육청 예시안을 참고하여 전면개정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2. 체벌 금지 조항,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 조항이 없습니다. 도교육청 예시안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삽입하여야 합니다.
3. 학생의 권리 부분이 제5장(70조~86조)으로 들어가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 너무 이질적이고 어떤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는데 규정 내용이 뒷받침을 못해주시니 그저 빛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집니다.) 학생의 권리 내용 부분을 규정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규정의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그 권리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4조 2항에 규정개정심의위원이 정확히 10명임을 명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10명이네요.)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5. 제10조.. 불온문서라는 표현..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가출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탈출인 경우가 많구요. 제11조..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교우관계(12조)에서 선후배 위계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배 선도에 순응하러니요.
7.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무엇이 불건전한 교제이

고 풍기문란인가요. 이성교제 규정이 따로 있다고 해서 보았는데 이성교제를 흡연과 동급으로 놓고 사고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성교제'라는 표현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이라는 표현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별도의 이성교제 규정을 폐지하길 권고합니다.

8. 제18조 집단행동 부분 너무너무 구시대적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단체, 서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인가요. 뒤에 나오는 징계기준표에서도 '집단행동 주도', '백지동맹', '학생 선동' 등을 징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발전의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9. 근태와 시상 부분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생활규정에서는 삭제가 필요합니다.
10. 제40조~43조의 용의복장 제한 부분은 최근 추세에 맞추어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므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11. 다른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논의에서 용모와 함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전자기기 규제인데, 이 학교의 생활규정을 보았을 때 전자기기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소지와 사용에 어떤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2. 동아리, 학생회 부분은 학생회규정과 같은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떼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3. 학생 징계 부분에 학생의 권리 부분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시안을 참조하여 진술권 보장, 재심 요구권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4. 규정에 첨부된 서식 중에 '학생 서약서'가 많은데,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학생이 쓰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양식은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는 어떤 위원회의 위원 지위를 수락할 때나 필요한 문서입니다.
15. 학생회 운영 규정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때 회원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위반입니다. 또한 정치적 단체 가입 금지, 학교 행정 사항 간여 금지 등은 학생을 민주적 권리 주체로 보지 않는 발상입니다. 학생회장단 후보 등록시 교사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학생자치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학생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학생회 운영 규정에서 내용적으로나 그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개입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말그대로 학생 자치여야 합니다.
16. 교복 규정에서 치마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은 불필요합니다. 착용 시기는 개별 학생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7. 별첨된 '징계기준표'에서 교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거나 학생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업' 부분과 '집단행위' 부분.)

메시지 내용

- 선생님. 제가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 그때 방문했을때 학생회 선거규정을 주셨잖아요. 지금 다시 보니 학생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 제5조 -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는게 학생자치의 원리에 부합하구요.
- 제16조 2항 - 마찬가지로 재투표일시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하는게 맞구요. 그리고 동표일때 당선인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동표가 안나올때까지 투표하는게 맞구요. 그리고 사실 과반수 지지를 못 얻으면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많이들 넣거든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선거에서도 못하고 있는 일이라 ^^;;
- 17조에서도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구요
- 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학교장에게 하고 이걸 학운위까지 가져가고 하는 것은... 학생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9조도 마찬가지로요.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도 역시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런거 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구요
- 학생인권센터 예시안(중등학생자치설명서에 포함) 참조해주세요^^*

3. 조사와 컨설팅이 놓치고 있는 것들

제가 근무하는 지평선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난해 휴대전화 수거 규정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침해이므로 규정을 개정하라는 결정문을 받아냈습니다. 이때 피진정인은 '지평선고등학교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이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진정요지와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 2(전라북도교육감) 관련

전라북도교육감은 지평선고등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제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나. 피진정인 2(전라북도교육감) 관련

진정인들은 지평선고등학교에서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인 피진정인 2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위 인정사실 마, 바항과 같이 2019년도에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도내 771교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생활규정상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상당

한 피진정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 권고에는 전수조사 항목에 휴대전화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학생들의 인권보호의무를 외면한 채 관리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므로 형식적 요건을 따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수조사와 개정 권고를 했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실과의 간극이 드러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뭔가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 학생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교들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컨설팅’의 차원이기에 업무담당교사 정도만 알 뿐이고, 다른 교사와 학생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 컨설팅 이후에 실제로 개정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후 점검을 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학교는 센터의 정책교육팀 장학사가 행정지도하거나 조사구제팀 조사관이 시정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업무들에 치여서 그런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인권침해적 상황은 지속됩니다.

조사와 컨설팅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조사와 컨설팅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주로 학생인권·노동인권·학생자치(학생회 임원 프로그램) 등의 강의를 가서 학생들과 수다를 나누다보면 발견됩니다.

실태조사는 자기기입식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응답률은 보통 5%를 보이는데, 응답에 응하는 학생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문항 구조화가 중요한데 현재 개발되어 있는 문항의 내용은 좀 더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숙사 실태조사는 업무 담당교사가 설문 대상입니다. 교사 보고 업무의 성격상 정확한 응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당연히 기숙사에서 살아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생활규정 전수조사와 개별컨설팅은 모두 생활규정 텍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생활규정의 역할을 하는 다른 숨은 규정이 있거나,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학교들에서 일단 생활규정은 도교육청 예시안을 그대로 베껴서 인권우호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후에, 실제 제한은 △규정개정심의위 결정을 통해서(생활규정에는 명시하지 않고) △학생회의 자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생활 약속을 통해서 △교사회의의 일방적 결정을 통해서 △아무런 논의과정 없이 교사들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규정 컨설팅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학교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학생자치 강의를 갔던 학교에서 학급회장 부회장들과 수다를 떨면서, △교사 말 안 듣는 학생을 종례후에 남겨서 억지로 나머지공부 시키는 소위 ‘학습코칭’ 프로그램 △염색과 파마 금지 △교복 위에 패딩 금지 △슬리퍼 금지 △연애 규제 △PT 500번 등 체벌로 느껴지는 운동 △화장실 문 수리요청 무시 △‘사복데이’ 행사 계획 불승인 등의 불만 사항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리 살펴보고 간 그 학교 생활규정에는 없던 내용들입니다.

또 어떤 학교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활규정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 미리 비공식적으로 그 학교 학생을 한 명 섭외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더니 생활규정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아닌 친구들이랑 차별이 심한 것 같아요 성적 높은 게 저럴 때 좋구나 싶어요...ㅋㅋ 완전 부루마불 우대권 같아요”, “학생들은 교복 잘 입는 편입니다 단속은 매일 아침 학생자치위원회(바른생활어찌고)가 문앞에 서서 하고 있어요 교복 미착용시 벌점 2점? 3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 이런 사항들 역시 생활규정텍스트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학생을 미리 인터뷰했기에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규정 상의 아무런 명시적 조항 없이 일상적,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규제는 주로 복장·화장 등 용모와 관련된 부분, 연애와 관련된 부분, 휴대전화·전자기기와 관련된 부분, 소지품 검사·압수에 대한 부분, 성적차별(학습실 입실 같은 유리한 학습환경, 학습자료·기자재 등의 혜택을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만 제공해주는 정책) 등이 많았습니다.

4. 전북 학생인권이 가야할 길

학생인권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제는 교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학교에 상담을 다녀본 바,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경시되는 경향이 큼니다. 인간은 모두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서로의 권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고자 할 때 꽃을 피웁니다. 학교라는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학생, 교사, 다양한 노동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권리의식을 높여갈 때, 비로소 교사 개인의 권리가 지켜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학교는 공적 공간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학력의 위계와 차별이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그게 불편하면 서로 말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욕설이나 모욕 등 함부로 말하는 것도 결국은 권력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사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교사 역할이 지식전달자에서 학습촉진자로 바뀐 것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입시교육이 그대로인 것은 부정적 요인입니다. 인권을 유예해서라도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소위 ‘좋은’ 상급학교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학부모가 여전히 많습니다.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교사 개인의 실수 내지는 자질 부족으로 보고 계몽하는 것보다는, 교사-학생이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학교에 가보면 학생회 임원들도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학생 삶을 결정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들로부터 학생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중요한 권리로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를 꼽았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죠. 가정에서부터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토론회

.....

생활규정개정
사례로 보는
학생인권